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Trade Remedy Reaction Team

수입규제대책반은 2000년 9월 외교부 내에 설치되었고,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을 반장으로 하여 전 세계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수입규제 정책 모니터링, 업계와의 대책회의 및 간담회 개최, 정부입장서, 답변서, 서한 발송, 조사당국과의 면담,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업계를 위한 예방적·사후적 지원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Contents

수입규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수입규제대책반은 어떤 일을 하나요?	6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현황	8
<hr/>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제도	
01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조사 기관	18
02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관련 법령	23
<hr/>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조사 절차와 특징	
01 반덤핑 조사	34
02 상계관세 조사	44
03 세이프가드 조사	49
<hr/>	
한-인도네시아 CEPA와 수입규제	
01 한-인도네시아 CEPA의 수입규제 관련 조문	60
02 양자 세이프가드	62
<hr/>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유의 사항	
01 넓은 답변 대상 범위	70
02 세분화된 자료 유형	71
03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요구	72
<hr/>	
기타 비관세장벽	
01 사전수입승인(PI) 제도	74
02 3대 인증(BPOM, SNI, 할랄) 제도	77
03 국산부품사용(TKDN) 제도	91

수입규제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덤핑관세(anti-dumping duty)

상품이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수입국의 해당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수입국이 수출국 기업에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만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수출국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상품이 수입되어 수입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상품 가격 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상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입국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입국이 취하는 수입규제 조치입니다. 조치의 형태는 관세부과, 수량제한, 관세율할당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허가제 강화, 품목분류 조정 등

최근 일부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의 목적으로 내국세를 인상하거나, 자의적인 수입 허가제를 도입하고, 품목 분류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입 제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어떤 일을 하나요?

01 제소동향을 파악하고 전달합니다

01



수입규제대책반은 전 세계에 있는 재외 공관을 통해 수입규제 제소 동향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업계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02 조사가 시작된 사실을 접수하고 업계에 전파합니다

02



외국의 조사당국은 수입규제 조치 관련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해당 국에 주재하는 우리 공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재외 공관이 접수한 사실을 관련 업체와 협회 등에 즉시 전파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03 우리 정부 입장을 문서로 해당국 정부에 전달합니다

03



수입규제대책반은 우리 정부입장서를 해당 국 정부에 전달하여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서한 등을 통해 부당한 조치나 절차에 대해 기업을 대신하여 항변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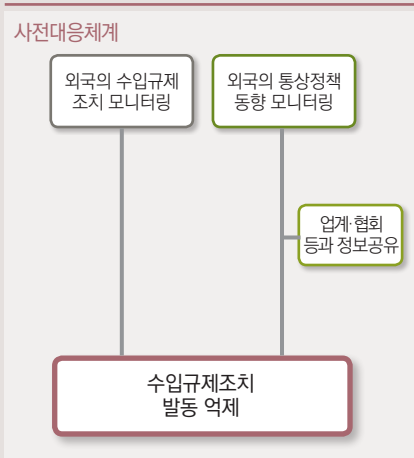
04 해당국 정부에 직접 설명합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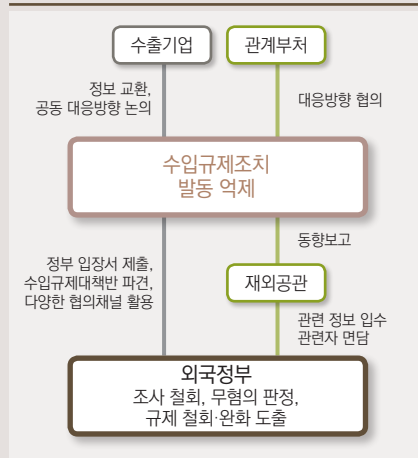


수입규제대책반은 직접 해당국을 방문하여 조사 담당자를 면담하고, 조사 관련 우리 입장 전달 및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관의 담당 직원 또한 조사 담당자를 수시 면담하여 관련 동향 파악 및 우리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개시 이전



조사개시 이후



이런 것이 궁금해요!



Q 기업 답변서도 수입규제대책반에서 작성해 주나요?

A 조사를 받게 된 기업의 답변서는 기업이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기업의 회계 장부 및 영업 관련 민감한 자료 전반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대신 작성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답변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조언해 드립니다.

Q 수입규제대책반과의 면담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19년간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응하면서 쌓아 온 경험과 재외 공관 및 해당국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수출 기업이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

Q 변호사 또는 회계사 수입비용도 지원해 주나요?

A 조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출기업은 일반적으로 수입국 현지 변호사 혹은 한국 내 회계사를 수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부가 기업의 변호사·회계사 비용을 대신 부담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단, 조사과정에서 WTO 협정에 위반한 조치가 중대한 경우에는 정부가 상대국 정부를 WTO에 제소할 수 있으며, 이 때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현황

인도네시아는 외국산 제품 수입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활용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995~2022년 사이 반덤핑 조사는 144건(세계 14위), 세이프가드 조사는 38건(세계 2위)이 개시되었습니다. 다만 상계관세 조사는 아직까지 개시한 적 없는데 이는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이 주로 활용하는 상계관세¹보다는 반덤핑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이 주로 활용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무역규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왔음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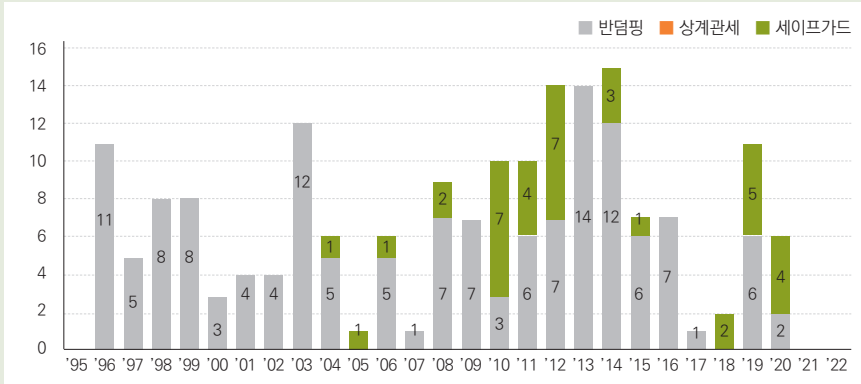
표 1 국가별 수입규제 활용도 순위(1995~2022년²)

반덤핑			세이프가드		
순위	국가	조사개시 건수 ³	순위	국가	조사개시 건수
1	인도	1,109	1	인도	47
2	미국	855	2	인도네시아	38
3	유럽연합	545	3	튀르키예	28
4	브라질	438	4	우크라이나	25
5	아르헨티나	414	5	칠레	20
6	호주	378	6	필리핀	20
7	중국	293	7	요르단	19
8	캐나다	279	8	이집트	15
9	남아공	252	9	미국	13
10	튀르키예	241	10	모로코	13
11	멕시코	173	11	에콰도르	10
12	한국	167	12	체코	9
13	파키스탄	148	13	남아공	9
14	인도네시아	144	14	콜롬비아	8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 1 상계관세 조사개시를 위해서는 제소대상 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국내산업이 자체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움. 또한,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국 정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 EU 등 정책적으로 상계관세 조사를 활용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더 널리 사용
- 2 세계무역기구(WTO)는 반덤핑은 1995.01.~2022.06. 기간, 세이프가드는 1995.01.~2022.12. 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및 이하 표는 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3 원심 개시 기준이며, A국가가 B품목에 대해 3개 국가를 상대로 조사를 개시했다면 3건의 조사로 산정함

그림 1 인도네시아의 연도별·유형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표 2 인도네시아의 연도별·유형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연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AD	-	11	5	8	8	3	4	4	12	5	-	5	1	7	7
CVD	-	-	-	-	-	-	-	-	-	-	-	-	-	-	-
SG	-	-	-	-	-	-	-	-	-	1	1	1	-	2	-
계	-	11	5	8	8	3	4	4	12	6	1	6	1	9	7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AD	3	6	7	14	12	6	7	1	-	6	2	-	-	144
CVD	-	-	-	-	-	-	-	-	-	-	-	-	-	-
SG	7	4	7	-	3	1	-	-	2	5	4	-	-	38
계	10	10	14	14	15	7	7	1	2	11	6	-	-	182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인도네시아의 연도·유형별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반덤핑관세를 주로 활용해왔으나, 2002년 세이프가드에 대한 법령⁴을 새로

4 Keputusan Presiden Nomor 84 Tahun 2002 tentang Tindakan Pengamanan Industri Dalam Negeri dari Akibat Lonjakan Impor (수입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2002년 제84호)

제정한 이후 2004년부터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 활용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건수는 2010년대 중반까지 점차 증가했으나 이후 몇 년간 다소 감소했음이 확인됩니다. 2014년 이후 인도네시아 수출의 또 다른 주요 장벽인 사전수입승인제도(Persetujuan Impor, PI), 국산부품사용제도(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 등의 비관세장벽 도입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인프라 구축 산업 및 제조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도네시아의 철강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가 다시금 증가했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섬유산업 육성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 섬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도 증가했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20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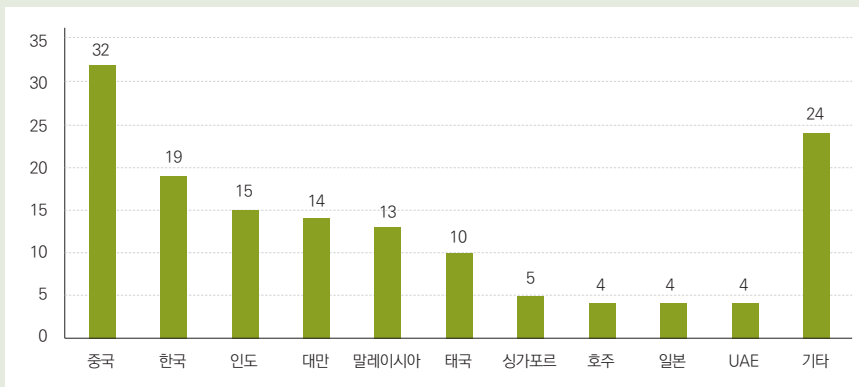
한편 2021년 이후 현시점(2023년 5월 기준)까지 새로 개시된 조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 배경은 인도네시아의 무역구조와 최근의 글로벌 불안정성의 맥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석탄, 원유, 가스, 철광석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무역흑자 증가의 이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간 무역구조에서의 높은 수출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극 활용해왔기에, 향후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면 다시금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 반덤핑조치 현황

1995~2022년 개시된 반덤핑 조사를 살펴보면, 전체 144건 중 중국에 대한 조사가 32건으로 1위를, 한국은 19건으로 2위에 해당합니다. 이어 인도에 대한 조사가 15건, 대만 14건, 말레이시아 13건, 태국 10건으로 주로 아시아 국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시아 국가로부터 철강 및 섬유 등 인도네시아 산업에서 중요한 제품의 수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2 주요국 대상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199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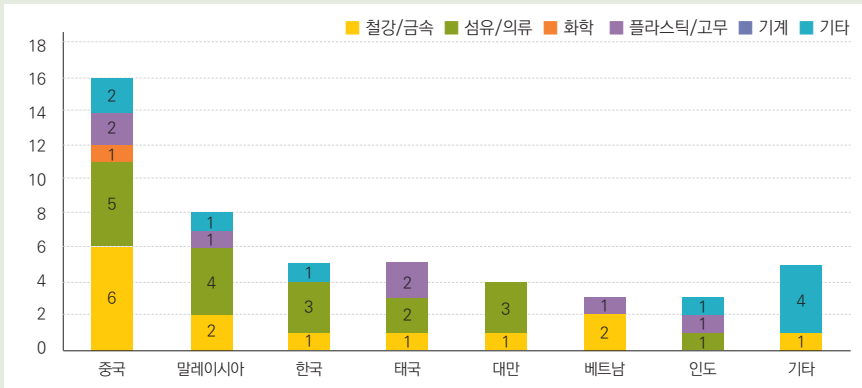


출처: 세계무역기구(WTO)

그림3은 최근 10년(2013~2022년)의 조사 개시를 국가·품목별로 분석한 표입니다. 중국의 경우 16건 중 철강/금속이 6건 섬유/의류가 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말레이시아와 한국에 대한 조사 개시는 철강/금속이 75%를 및 섬유/의류가 80%에 해당합니다. 철강과 섬유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요 육성 산업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로 철강/금속 또는 섬유/의류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인도네시아의 조사 방식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3 최근 10년간 국가·품목별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2013~2022년)



출처: 세계무역기구 무역모니터링DB(WTO Trade Monitoring Database, TMDB)

표 3 최근 10년간 반덤핑 조사 개시 목록(2013~2022년)

조사개시일	품목군	품목명	조사대상국
2020-03-23	화학	라이신(lysine)	중국
2020-03-09	철강/금속	합금강 열연코일 (hot-rolled coil of other alloy steel)	중국
2019-10-23	철강/금속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cold-rolled stainless steel(CRS))	중국, 말레이시아
2019-08-26	철강/금속	코팅 강철(coated steel)	중국, 베트남
2019-08-26	플라스틱/고무	이축 배향 폴리프로필렌 (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BOPP))	중국, 말레이시아
2019-02-15	기타	캐번디시 바나나(Cavendish bananas)	필리핀
2017-10-27	섬유/의류	스핀드로우사(spin draw yarn(SDY))	중국
2016-12-23	철강/금속	칼라강판(coloured steel, coated)	중국, 베트남
2016-08-31	철강/금속	선재(steel wire rods)	중국

조사개시일	품목군	품목명	조사대상국
2016-08-22	섬유/의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2016-08-08	기타	프리트(frit)	중국
2015-09-07	플라스틱/고무	이축 배향 폴리프로필렌 (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태국, 베트남
2015-06-01	기타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호주,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2014-12-22	철강/금속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cold-rolled stainless steel)	중국, 대만, 한국, 말레 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2014-08-27	기타	밀가루(wheat flour)	인도, 스리랑카, 튀르키예
2014-07-25	플라스틱/고무	이축 배향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biaxially oriented polyethylene terephthalate(BOPET))	중국, 인도, 태국
2013-08-02	섬유/의류	드로우 텍스처사(draw textured yarn)	중국, 대만,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2013-08-02	섬유/의류	부분배향사(partially oriented yarn)	중국,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2013-07-31	섬유/의류	스핀드로우사(spin draw yarn)	중국, 대만, 한국, 말레이시아

출처: 세계무역기구 무역모니터링DB(WTO Trade Monitoring Database, TMDB)

②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

인도네시아는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15건의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품목으로는 섬유/의류가 총 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0대 섬유제조국으로 섬유 및 의류 산업이 전체 GDP의 약 7%(2020년 기준)⁵⁾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의류 제조가 글로벌 브랜드의 OEM이기에 내수 소비를 위한 섬유는 상당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5 <2021년 인도네시아 섬유산업 정보>, 국별 주요산업 - 인도네시아, KOTRA

이에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섬유 생산 기지를 넘어 자국 브랜드를 보유한 섬유/의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 중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섬유/의류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4 최근 10년간 품목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건수(2013~2022년)

섬유/의류	철강/금속	플라스틱/고무	기계	기타	총계
5	3	1	1	5	15

출처: 세계무역기구 무역모니터링DB(WTO Trade Monitoring Database, TMDB)

표 5 최근 10년간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목록(2013~2022년)

조사개시일	품목군	품목명
2020-11-18	플라스틱/고무	폴리스티렌(expansible polystyrene(EPS))
2020-10-26	기타	궤련지(cigarette paper)
2020-10-01	섬유/의류	의류 및 의류액세서리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2020-06-10	섬유/의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바닥깔개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2019-11-13	기타	과당시럽(fructose syrup)
2019-09-18	섬유/의류	합성 및 인조 섬유로 만든 실 (yarn of synthetic and artificial staple fibres)
2019-09-18	섬유/의류	직물(fabrics)
2019-09-18	섬유/의류	커튼 및 가구용품(curains and other furnishing articles)
2019-06-12	기계	증발기(evaporators)
2018-10-09	철강/금속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
2018-03-29	기타	세라믹(ceramic flags and paving)
2015-07-14	기타	글루코스(glucose)
2014-06-20	기타	제지(paper and paperboard)
2014-02-12	철강/금속	I-H형 합금강(I and H sections of other alloy steel)
2014-01-17	철강/금속	철사 막대(bars and rods)

출처: 세계무역기구 무역모니터링DB(WTO Trade Monitoring Database, TMDB)


한국 대상 수입규제 현황

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인도네시아의 수입 규제 조치는 반덤핑 1건, 세이프가드 6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이 3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섬유/의류가 2건입니다. 과거 한국은 인도네시아 반덤핑 규제의 주요 대상이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없으며, 조치 부과 중인 품목은 석도강판(Tin Plate) 한 건입니다. 다만 해당 조치는 2013년 시작되어 10년 넘게 부과되고 있어, 일단 부과 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연장을 통한 장기간 수입규제가 지속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표 6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 현황

품목명	품목분류	규제내용	조사대상국	조사개시일	최종판정일
폴리스틸렌 (Expansible Polystyrene)	플라스틱/ 고무	세이프 가드	모든 국가	2020-11-18	2021-04-07
궤련지 (Cigarette Paper)	기타			2020-10-26	2021-11-30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바닥깔개 (Carpets and Other Floor Coverings)	섬유/의류			2020-06-10	2021-02-03
직물 (Fabrics)	섬유/의류			2019-09-18	2020-05-27
알루미늄 호일 (Aluminium Foil)	철강/금속			2018-10-09	2019-10-24
I-H형 합금강 (I and H sections of other alloy steel)	철강/금속			2014-02-12	2015-01-21
석도강판 (Tin plate)	철강/금속	반덤핑	한국, 중국, 대만	2012-06-25	2013-10-01

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DB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제도

01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조사 기관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조사 기관⁶은 무역방어국(Direktorat Pengamanan Perdagangan⁷), 반덤핑 위원회(Komite Anti-Dumping Indonesia, KADI⁸), 세이프가드 위원회(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KPPI⁹)입니다. 무역방어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무역장벽에 대한 정책 및 기술적 지침 수립, 이행을 담당하며, 수입규제 조사는 반덤핑 위원회(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업무) 및 세이프가드 위원회(세이프가드 조사 업무)가 진행합니다.

그림 4 수입 규제 조사 절차 별 담당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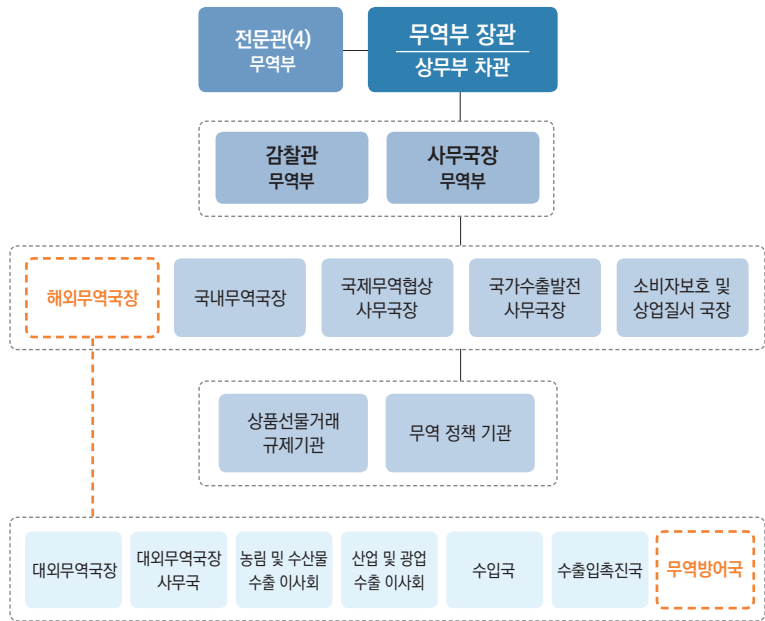
출처: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

6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관련 기관의 공식명칭 및 법령은 모두 인도네시아어로만 제공됨
 7 영어 번역 Directorate of Trade Security에 해당
 8 영어 번역 Committee of Anti-Dumping Indonesia에 해당
 9 영어 번역 Committee of Trade Security Indonesia에 해당

무역방어국
(Direktorat Pengamanan Perdagangan : DPP)

무역방어국은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terian Perdagangan¹⁰) 해외무역국장(Direktorat Jenderal Perdagangan Luar Negeri¹¹) 산하 조직으로 무역 보호와 무역 안보 분야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관련 규정, 기준, 절차, 기술 지침 등을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무역방어국은 무역장벽 모니터링과 평가, 기술장벽 대응, 수입규제 정책 수립, 이행, 평가를 담당합니다.

그림 5 인도네시아 무역부 조직도



출처: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terian Perdagangan) 홈페이지¹²

10 영어 번역 Ministry of Trade에 해당

11 영어 번역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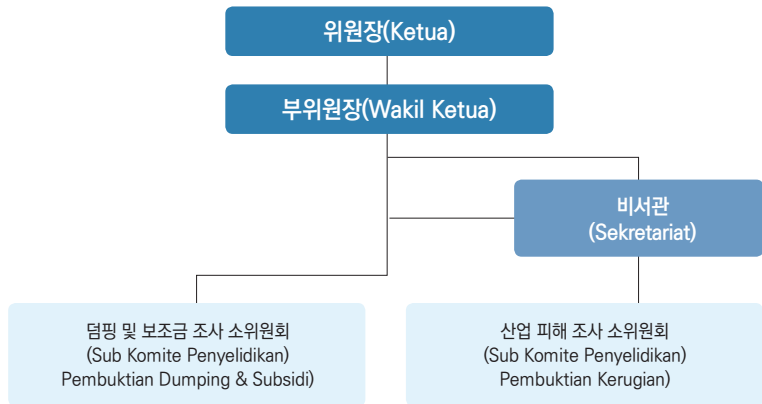
12 <https://www.kemendag.go.id/tentang/struktur-organisasi>

반덤핑 위원회 (Komite Anti-Dumping Indonesia : KADI)

반덤핑 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덤핑과 보조금에 대한 조사 업무 수행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덤핑 및 보조금의 존재여부, 국내산업의 피해, 덤핑 및 보조금과 산업 피해 사이의 인과 관계 성립 여부를 파악해 무역부에 권고안을 제출합니다. 무역부는 이를 검토해 그 결과를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¹³에 보내며, 재무부는 그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관세 부과 요건 성립 여부, 부과 기간, 관세율을 최종 결정합니다.

반덤핑 위원회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됩니다. 덤핑 및 보조금 조사 소위원회는 덤핑 및 보조금의 존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산업피해조사 소위원회는 산업 피해 증거를 수집하고 덤핑 및 보조금의 존재와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합니다.

그림 6 반덤핑위원회(KADI) 조직도



출처: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 홈페이지¹⁴

인도네시아 반덤핑 위원회는 조사 개시, 예비 판정, 최종 판정 등의 진행 과정을 웹사이트에 공고합니다.

13 영어 번역 Ministry of Finance에 해당

14 <https://kadi.kemendag.go.id/tentang-kami>

그림 7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 웹사이트 조사 정보

Komite Anti Dumping Indonesia

alamat Pos: keddi@kemendag.go.id | Telp: 0213890841

Beranda Tentang Kami Informasi Kasus Unduh FAQ Kontak Kami

Berkas - PMK BMAD

Kategori Berkas: Regulasi, Dokumen Penyelidikan, PMK BMAD, Semua Berkas

No.	Type	Tanggal	Nama	Berkas
1	PMK BMAD	2022-12-02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70/PMK.010/2022 Tentang Pengenaan Bea Masuk Anti-dumping Terhadap Impor Produk Polyester Staple Fiber (PSF) dari India, Republik Rakyat Tiongkok, dan Taiwan	[Download]
2	PMK BMAD	2022-02-22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5/PMK.010/2022 Tentang Pengenaan Bea Masuk Anti-dumping Terhadap Impor Produk Hot Rolled Coil of Other Alloy (HRC Alloy) dari Negara Republik Rakyat Tiongkok	[Downl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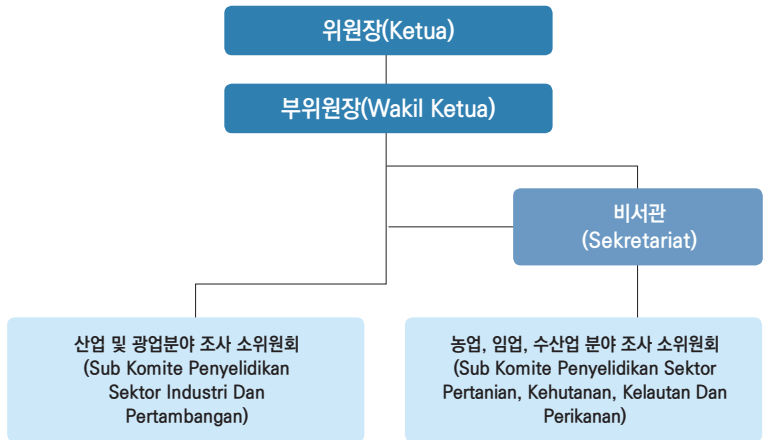
출처: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 홈페이지¹⁵

세이프가드 위원회 (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 KPPI)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 구제하기 위한 조치인 세이프가드 조사 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사에 필요한 증거와 정보를 수집,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무역부에 제출합니다. 무역부는 그에 대한 검토 결과를 재무부에 송부하며, 재무부는 세이프가드 관세나 수량 쿼터 등의 조치 발동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15 <https://kadi.kemendag.go.id/>

그림 8 세이프가드 위원회(KPPI) 조직도



출처: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위원회(KPPI) 홈페이지¹⁶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조사 개시, 예비 판정, 최종 판정 등의 조사 과정을 웹사이트(<https://kppi.kemendag.go.id>)에 공고합니다.

그림 9 세이프가드위원회(KPPI) 웹사이트의 정보 고시

No.	Types of products	Amount
1.	Products that have been subject to TPP in the form of Safeguard Measure Import Duty (DMTP)	27 Products
2.	Products that have been subject to TPP in the form of quotas	1 Product
3.	Products that have been subject to TPP and extended	6 Products
4.	Product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9 Products
5.	Products that have been recommended to the Minister of Trade	4 Products
6.	Products that have been subject to TPP in the form of Temporary Safeguard Measure Import Duty (DMTPS)	3 Products

출처: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위원회(KPPI) 홈페이지

02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관련 법령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관련 법 체계

표 7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관련 법 체계

구분	원문	국문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10호(관세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무역법)
시행령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Nomor 34 Tahun 2011 Tentang Tindakan Antidumping, Tindakan Imbalan, dan Tindakan Pengamanan Perdagangan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1년 제34호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정부령)
시행규칙 (장관령)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I Nomor 76/M-Dag/Per/12/2012 Tentang Tata Cara Penyelidikan Dalam Rangka Pengenaan Tindakan Antidumping dan Tindakan Imbalan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절차와 관련된 무역부령 2012년 제76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무역부령)
	Kepmenperindag No 85 of 2003 Concerning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Requests for Investigations	세이프가드 조사신청절차 및 요건에 관한 산업부령 2003년 제85호(세이프가드 산업부령)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관련 법 체계는 법률-시행령(정부령)-시행규칙(장관령)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관세법과 무역법이 법률로서 수입규제를 규정하며 관세법에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일반 내용을 규정합니다. 2014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신규 제정된 무역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정부 권한을 강조합니다.

정부령으로는 2011년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시행령(정부령)인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1년 제34호(Peraturan Pemerintah Nomor 34 Tahun 2011 Tentang Tindakan Antidumping, Tindakan Imbalan, dan Tindakan Pengamanan Perdagangan)'가 제정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은 각 규제 조치에 대한 상세 절차를 규정합니다. 그 외 수입규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적 규정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는 무역부령에서, 세이프가드의 경우 산업부령에서 각 규정됩니다.

(1) 법률: 관세법 및 무역법

표 8 인도네시아 관세법의 수입규제 관련 조항

관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5년 제10호(관세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5 Tentang Kepabeanan	
제4장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제1부 반덤핑관세	제18조: 반덤핑관세의 부과요건 제19조: 반덤핑관세의 부과방법 제20조: 반덤핑관세의 부과 요건 및 방법의 세부규정 제정권한 위임
제2부 상계관세	제21조: 상계관세의 부과요건 제22조: 상계관세의 부과방법 제23조: 상계관세의 부과 요건 및 방법의 세부규정 제정권한 위임

관세법은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 요건과 방법에 대한 일반 사항을 규정하며, 관련 세부 내용은 정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표 9 인도네시아 무역법의 수입규제 관련 조항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무역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

제9장 무역보호 및 안보

- 제67조: 무역보호 및 안보정책의 권한 및 유형
 제68조: 인도네시아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방어의무
 제69조: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의무
 제70조: 반덤핑조치의 시행의무
 제71조: 상계관세조치의 시행의무
 제72조: 무역보호조치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권한 위임

인도네시아는 2014년 국내산업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4개 법률을 통합 및 대체하는 무역법인 ‘무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4년 제7호(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7 Tahun 2014 Tentang Perdagangan)’을 신규 제정했습니다. 동 법안은 인도네시아의 국익 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폭넓은 무역규제 권한의 근거를 부여합니다. 특히 수입규제조치 시행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여 조치 강화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단 동 법안은 정부의 수입규제조치 발동 여건만을 규정하며 그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정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2)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

인도네시아는 2011년 관세법의 위임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세부 내용 규정 정부령’¹⁷(1996년 제정)과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세부 내용 규정 정부령’¹⁸(2002년 제정)을 통합한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17 Peraturan Pemerintah Nomor 34 Tahun 1996 tentang Bea Masuk Antidumping dan Bea Masuk Imbalan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정부령 1996년 제34호)

18 Keputusan Presiden Nomor 84 Tahun 2002 tentang Tindakan Pengamanan Industri Dalam Negeri dari Akibat Lonjakan Impor (수입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대통령령 2002년 제84호)

정부령(No.34/2011)’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총 9장, 103개조로 구성되며, 반덤핑 조치는 제2장에서, 상계관세 조치는 제3장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는 제4장에서 상세 규정합니다.

표 10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정부령 2011년 제34호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
Peraturan Pemerintah Nomor 34 Tahun 2011 Tentang Tindakan Antidumping, Tindakan Imbalan, dan Tindakan Pengamanan Perdagangan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반덤핑조치
제1부	반덤핑관세
제2부	반덤핑조사
제3부	증거와 정보
제4부	잠정조치
제5부	가격약속
제6부	반덤핑관세의 부과
제7부	재심
제3장	상계관세조치
제1부	상계관세
제2부	상계관세조사
제3부	증거와 정보
제4부	잠정조치
제5부	가격약속
제6부	상계관세의 부과
제7부	사법적 재심
제4장	세이프가드조치
제1부	세이프가드조치의 유형
제2부	세이프가드조사

제3부	증거와 정보
제4부	잠정세이프가드조치
제5부	세이프가드조치의 부과
제6부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제5장	통지
제6장	조사당국
제7장	분쟁해결
제8장	기타 조항
제9장	종결 조항

(3) 기타 시행규칙

①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의 하위 규정인 ‘반덤핑/상계관세 무역부령’은 정부령에 규정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의 신청 요건, 조사 개시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며, 공청화·가격약속·중간재심(interim review)·종료재심(sunset review) 등 수입규제 조사의 각 단계별 세부 절차를 구체 규정합니다.

표 11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무역부령

반덤핑/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절차와 관련된 무역부령 2012년 제76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무역부령)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RI Nomor 76/M-Dag/Per/12/2012 Tentang Tata Cara Penyelidikan Dalam Rangka Pengenaan Tindakan Antidumping dan Tindakan Imbalan

제1조	용어 정의
제2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사 신청 요건
제3조	조사신청서(제소장) 작성요령
제4조	조사신청을 위한 국내생산자 요건
제5조	조사개시를 위한 국내생산자 요건

제6조	미소기준
제7조	가용정보 활용
제8조	조사개시 기한
제9조	공청회의 목적 및 개최 권한
제10조	공청회 내용
제11조	공청회 요청 주체
제12조	공청회 요청 기한
제13조	공청회 개최 기한
제14조	공청회 참석 신청방법 및 기한
제15조	공청회 사용 언어
제16조	공청회 이후 서면자료 제출 기한
제17조	가격약속 신청 요건
제18조	가격약속 수락 요건
제19조	재심 관련 일반규정
제20조	중간재심 신청 요건
제21조	중간재심 절차
제22조	종료재심 신청 요건
제23조	종료재심 절차
제23A조	종료재심 시 국익 고려(2013년 신설)
제24조	발효 규정

2013년 인도네시아는 ‘반덤핑/상계관세 무역부령’에 제23A조를 신설해 종료재심에서 국가 이익을 고려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종료재심 시 무역부 장관은 반덤핑 위원회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연장 권고안을 국익의 관점에서 고려하기 위해 조사대상 물품과 관련 부처의 장관 또는 정부기관의 장에게 권고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해당 부처 의견 검토 후 KADI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 조치, 조사 신청 관련 세부 내용은 '세이프가드 산업부령'에서 규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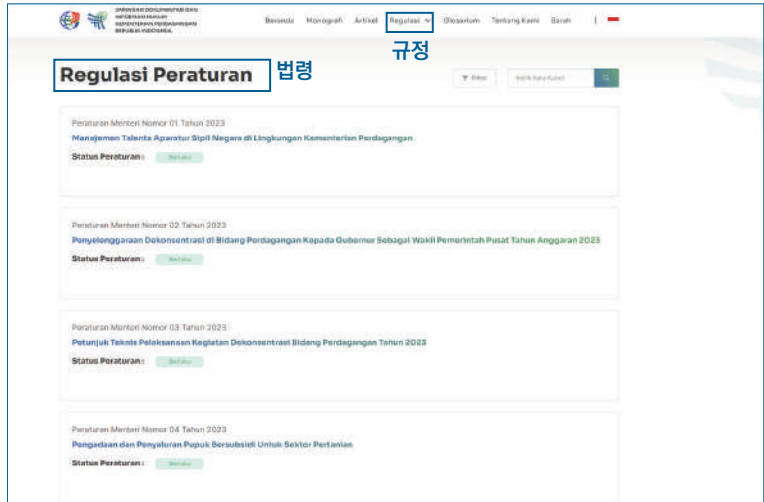
표 12 세이프가드 산업부령

세이프가드 조사신청절차 및 요건에 관한 산업부령 2003년 제85호 (세이프가드 산업부령) Kepmenperindag No 85 of 2003 Concerning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Requests for Investigations	
제1조	용어 정의
제2조	세이프가드 조사신청 요건
제3조	조사신청서(제소장) 작성요령
제4조	조사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비밀정보취급방법
제5조	조사개시 요건 및 개시기한
제6조	조사개시 기각시의 이해관계인 통보
제7조	조사개시사실 통지
제8조	발효 규정

수입규제 관련 인도네시아 국내법 목록 및 위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인도네시아 국내법은 무역부 홈페이지에서 Regulasi(규정)를 클릭 후, Peraturan(법령)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역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인도네시아 법령 전체를 조회 가능하며 Tindakan Antidumping(반덤핑), Tindakan Imbalan(상계관세), Tindakan Pengamanan(세이프가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언어로 영어를 지원하긴 하나 일부 최신 법령은 영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조회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림 10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관련 법령 목록 및 위치 - 무역부 홈페이지



출처: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terian Perdagangan) 홈페이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국내법은 인도네시아 반덤핑 위원회 및 세이프가드 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Unduh(다운로드)를 클릭 후, Regulasi(규정)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법령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Regulasi(규정)를 클릭한 후, 국내규정(Regulasi Nasional) 및 WTO 규정(Regulasi WTO) 메뉴를 선택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관련 법령 목록 및 위치 - 반덤핑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 홈페이지

그림 12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관련 법령 목록 및 위치 - 세이프가드위원회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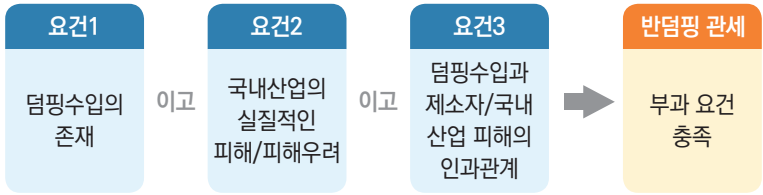
출처: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위원회(KPP) 홈페이지

A light blue world map is centered on the page, showing the continents of Africa, Europe, Asia, and Australia. The map is semi-transparent and serves as a background for the text.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조사 절차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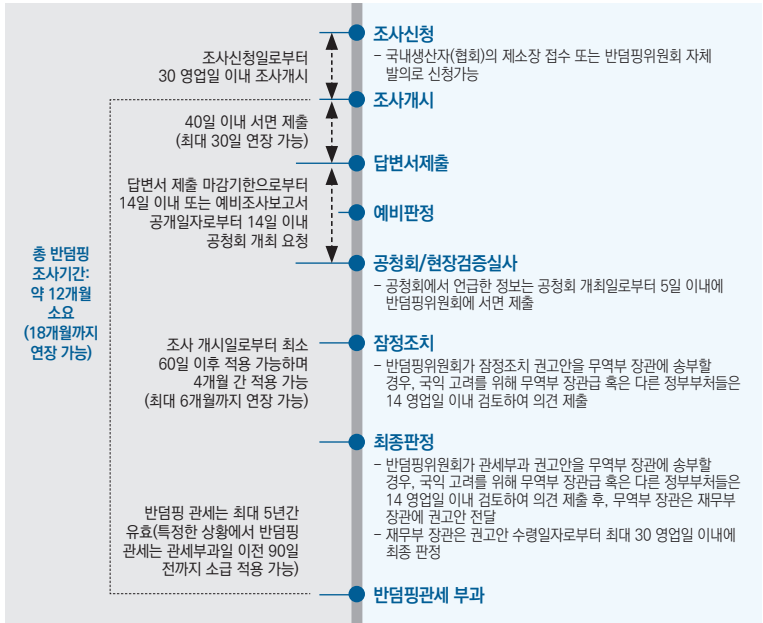
01 반덤핑 조사

그림 13 반덤핑관세 부과 요건



반덤핑 조사는 반덤핑관세의 부과 요건인 1) 덤핑수입의 존재, 2) 국내산업의 피해, 3)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입니다.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¹⁹에 따른 조사 절차 및 단계 별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14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조사 절차



출처: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

19 Peraturan Pemerintah Nomor 34 Tahun 2011 Tentang Tindakan Antidumping, Tindakan Imbalan, dan Tindakan Pengamanan Perdagangan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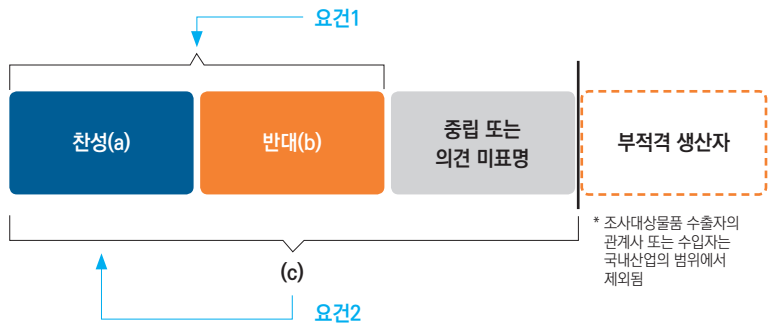
① 조사신청(Request for Investigation)

반덤핑 조사는 반덤핑 위원회의 직권 개시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생산자 또는 관련 협회의 조사 청원을 통해 개시될 수 있습니다. 국내생산자 및 관련 협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내산업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 (a) 조사를 신청하는 국내생산자 또는 협회(신청인)의 생산량 합계가 신청인과 조사를 반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b) 신청인과 조사를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가 제소자와 조사를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와 조사를 반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대표성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인 또는 조사를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직권조사의 경우 조사를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동종 물품 총 생산량의 25% 이상인 경우에만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림 15 조사개시를 위한 국내생산자 요건



요건1 : $a/(a+b) \geq 50\%$

조사를 신청(또는 찬성)하는 생산자들의 생산량이 반대하는 생산자들의 생산량 이상

요건2 : $a/c \geq 25\%$

조사를 신청(또는 찬성)하는 생산자들의 생산량이 국내산업(적격생산자) 전체 생산량의 25% 이상

조사 신청을 위해서는 덤핑수입의 존재, 제조자의 피해, 그리고 덤핑 존재와 제조자의 피해 간 인과 관계에 대한 증빙을 인도네시아어로 반덤핑 위원회에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반덤핑 위원회가 반덤핑 조사를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덤핑수입의 존재, 국내산업의 피해, 그리고 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일차적 증거로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의 필요성 검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미소마진(de minimis)인 경우로 판단되면 조사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 (a) 덤핑차액이 덤핑가격의 2% 미만인 경우
- (b)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전체 수입량의 3% 미만이고, 수입량이 3% 미만인 국가들의 수입량 합계가 전체 수입량의 7% 이하인 경우

② 조사개시(Initiation of Investigation)

조사신청서 접수 시 반덤핑 위원회는 제조장 접수 사실을 수출국 정부에 통보하고, 조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제출된 증거의 충분성과 정확성을 검토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덤핑 조사는 조사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며, 반덤핑 위원회는 조사 개시의 사실을 수출자, 수출국의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부, 수입자 및 국내생산자에게 질문서와 함께 우편으로 통보하고 답변 제출을 요청합니다.

③ 답변서 및 정보 제출(Response and Information)

조사가 개시되면, 반덤핑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에 질문서를 우편 발송합니다.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의 경우 인도네시아어로 서면 제출²⁰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등 원문과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자, 수출 생산자, 수입자가 다수이거나 조사 대상 물품의 종류가 광범위할 경우 위원회는 조사의 대상을 다음의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 현재 시점(2023. 5. 기준) 인도네시아 무역부 공고 및 질문서 언어는 모두 인도네시아어인 것으로 확인됨

- (a)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한 통계방식으로 수출자, 수출 생산자, 수입자, 또는 조사 대상 물품 종류를 임의로 선정
- (b) 조사 대상 국가의 조사 대상 물품 중 수출 물량 비중이 가장 큰 순서대로 선택

답변서는 질문서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최대 40일 이내 증빙 자료와 함께 서면 제출해야 하며, 최대 30일의 기한 연장을 반덤핑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 질의서²¹는 A부터 H까지 총 8개의 Section이며, 회사 구조 및 법적 대리인 정보 등에 대한 일반 사항,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한 설명, 생산 및 재고 등에 대한 경영 통계, 내수 시장 판매, 인도네시아 및 기타 시장에 대한 수출 판매, 매출 원가 및 관리 비용, 전산 자료 및 체크 리스트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Section은 별도의 표지와 폴더로 구분하고, 인쇄 및 디지털 문서 모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Section에는 줄글로 표시된 세부 질문 목록과, 구체 수치 제출이 요구될 시 기입해야 하는 표가 포함되어 교부됩니다. 덤핑 마진 산정을 위한 자료는 Section G에 해당하며, 해당 자료는 컴퓨터 디스크 혹은 CD-ROM의 형태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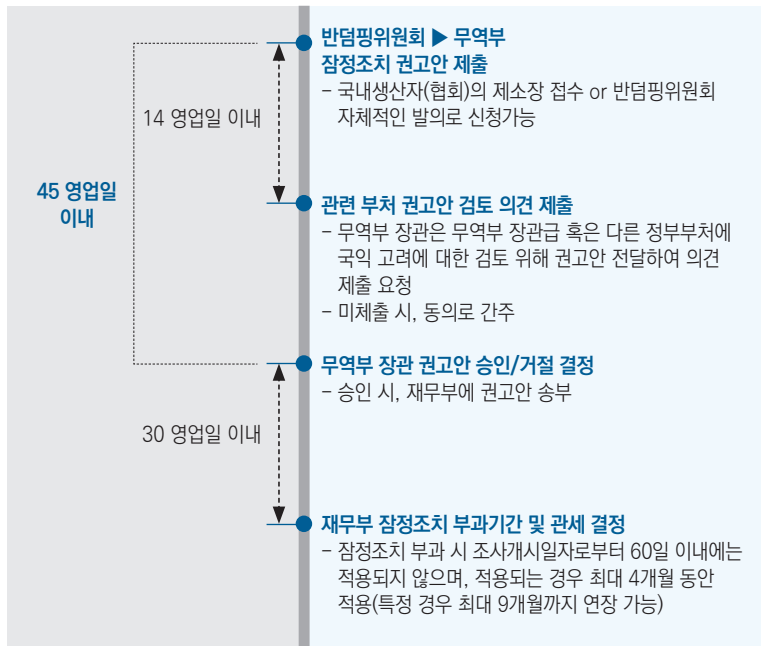
반덤핑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수출자, 국내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 당사자 외에도 산업 내 이해 관계자 및 소비자 단체에 조사 대상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 정보 중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하여서는 기밀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하며, 만일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시 위원회는 주장된 기밀성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밀 정보로 인정된 정보는 제출자의 승인 없이는 타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

21 2014년 인도산, 스리랑카산 및 터키산 밀가루(Wheat Flour)에 대한 수출자 질의서가 대외 공개되어 해당 질문서를 참고함

④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Preliminary Determination / Provisional Measures)

조사 과정 중 반덤핑 위원회가 덤핑 수입 및 그로 인한 산업 피해가 일견 (prima facie)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덤핑 위원회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그 내용을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합니다. 예비판정 결과 잠정 조치의 필요성이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무역부 장관에게 잠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림 16 잠정조치 부과 절차



출처: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

무역부 장관은 반덤핑 위원회의 잠정조치 권고안 수령일로부터 최대 45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에 앞서 무역부 장관은 해당 권고안을 관련 부처의 장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의 장에게 전달해 조치가 국익에

미칠 영향 검토를 요청합니다. 권고안을 받은 관련 부처의 장관 및 기관장은 권고안 수령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만일 기간 내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시 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역부 장관이 반덤핑 위원회의 권고안을 승인하는 경우 그 다음 절차로 무역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에 권고안을 전달합니다. 재무부 장관은 수령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 잠정 조치의 기간 및 잠정 관세율을 최종 결정합니다. 잠정 반덤핑 관세는 관세 납부, 현금 예치, 담보의 형태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는 조사 개시일 60일 이후부터 최대 4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이는 조사 대상 물품의 상당한 비중을 생산하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잠정 반덤핑 관세율이 예비 덤핑 마진 보다 더 낮은 경우 잠정 조치는 6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판정에서 덤핑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산업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잠정 조치는 종료됩니다. 무역부 장관은 최종 판정 보고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 재무부 장관에게 잠정 조치 종료를 알리며, 재무부 장관은 무역부 장관의 보고 수취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조치의 종결을 공고합니다. 잠정 조치 종결 결정 시, 수입자는 관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담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 공청회(Hearing)

공청회는 조사과정에서 제출된 정보와 증거를 구두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로 수출자·국내생산자·수입자 및 수출국의 요청, 또는 반덤핑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최됩니다. 이해 관계자의 공청회 개최 요청은 답변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 또는 예비 조사 보고서 공개일로부터 최대 14일 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반덤핑 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 여부를 회신하며, 공청회는 최대 20일 이내 개최됩니다.

공청회는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이해 관계 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반덤핑 위원회에 성명·직책·회사명·대리인명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청회 중 언급된 정보가 이후 조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 반덤핑 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서면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청회에서 언급된 공개 정보는 수출자, 수입자, 국내 생산자 등을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⑥ 실사(Verification)

반덤핑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 검증을 위해 수출자, 수입자 및 국내 생산자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를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 실사를 수행하는 경우 반덤핑 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내 수출국 정부 대표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⑦ 가격약속(Undertaking Measures)

수출자 또는 반덤핑 위원회는 일종의 조정 방안으로 가격약속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가격 약속은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변경하거나 덤핑 물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수출자의 가격 약속 제안은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일로부터 또는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예비 조사 보고서 공개일로부터 7일 이내 행해져야 합니다.

수출자가 가격 약속을 제안하는 경우, 반덤핑 위원회는 이를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안은 그 내용이 덤핑 물품으로 인한 산업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수락되며, 이 경우 위원회와 제안 수출자는 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합니다. 만약 수출자가 이를 위반할 시 반덤핑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해 반덤핑 조사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한편 가격 약속 수락이 조사의 즉시 종결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반덤핑 조사는 가격 약속과 별개로 지속되며, 조사 결과 최종 긍정 판정이 내려질 경우 가격 약속 조치는 지속되고, 최종 부정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가격

약속 조치는 종결됩니다. 단, 산업무피해가 가격약속의 이행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가격약속이 지속됩니다.

가격 약속이 이행되는 동안 수출자는 반덤핑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가격약속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행에 대한 검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가격 약속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잠정 관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가 지속됩니다.

⑧ 최종 판정 및 반덤핑관세 부과(Final Determination)

반덤핑 조사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12개월안에 완료되어야 하나, 특별한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종 긍정 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역부 장관은 반덤핑 조치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반덤핑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안을 관련 부처의 장관 또는 기타 정부기관 장에게 전달해 검토를 요청합니다. 잠정 조치와 동일하게 관련 부처의 장관 및 정부기관 장은 요청일로부터 14 영업일 이내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반덤핑 위원회 권고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익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무역부 장관은 반덤핑 위원회의 권고안 제출일로부터 45 영업일 이내 권고안을 수락 혹은 거절합니다. 수락할 경우 무역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에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과 관세율 결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재무부 장관은 무역부 장관의 서한 수령일로부터 최대 30 영업일 이내 그 내용을 최종 결정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관세는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에 반덤핑 관세율을 곱하는 종가세(Ad valorem rate)의 형태로 취해지며, 반덤핑 관세는 관세부과일로부터 최대 5년간 유효합니다. 단, 반덤핑 관세의 산업 피해 구제 효과를 훼손할 정도로 대량의 덤핑이 단기간 수입되거나 수입자가 산업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덤핑 물품 수입을 지속한 경우, 반덤핑 관세는 잠정 반덤핑 관세부과일 이전 90일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⑨ 조사 종결(Termination of Investigation)

만약 조사 기간 어느 때라도 산업 피해를 유발하는 덤핑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반덤핑 위원회는 즉시 조사를 종결하고 이를 무역부 장관에 보고합니다. 조사 종결은 수출 업체, 수출 업체의 생산자, 수출국의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 국내 산업 제소자 및 수입자 모두에게 전달됩니다.

재심

① 중간재심(Interim Review)

중간재심은 반덤핑 관세 부과 철회, 미부과, 반덤핑 관세율 재산정을 원하는 수출자 및 수입자의 요청 혹은 반덤핑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됩니다. 중간재심은 반덤핑 관세 부과일로부터 최소 12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하며, 수출자 요청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대한 덤핑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수출 판매량, 수출 가격 등의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반덤핑 위원회는 기존 조치 철회 시 덤핑 및 산업피해가 지속 여부 또는 재발할 가능성을 조사하는 중간재심을 진행합니다. 중간재심 조사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조치의 철회, 유지, 관세율 변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일몰재심(Sunset Review)

일몰재심은 반덤핑 관세 부과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이해관계자의 신청 또는 반덤핑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됩니다. 일몰재심으로 관세율 변경을 신청할 경우 희망 관세율의 적합성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몰재심 개시 요청 또는 반덤핑 위원회의 개시 결정은 관세 부과 만료 최소 15개월 이전에는 행해져야 합니다.

일몰재심 신청서 접수 후 반덤핑 위원회는 관세 철회 시 덤핑 및 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조사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이며, 절차는 원심 조사 절차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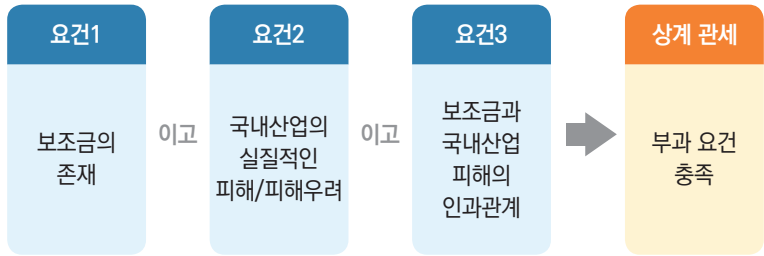
표 13 반덤핑조사 절차상 원심 및 재심 비교

차이점	원심	중간재심	일몰재심	신규수출자재심
신청자	인도네시아 국내생산자, KADI 조사당국 (직권)	인도네시아 국내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신규수출자, KADI 조사당국 (직권)	인도네시아 국내생산자, KADI 조사당국 (직권)	신규수출자 ²²
신청기한	해당 사항 없음	반덤핑 관세 부과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최초의 반덤핑관세 부과로부터 12개월 이후	반덤핑 관세 부과 만료일 15개월 전까지 기존 조치가 만료되기 15개월	반덤핑 관세 부과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수출국 통지의무	수출자에 직접 통지 또는 수출국 정부나 수출국 내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를 통해 통지	수출자에 직접 통지 또는 수출국 정부나 수출국 내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를 통해 통지 (원심규정준용)	수출자에 직접 통지 또는 수출국 정부나 수출국 내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를 통해 통지 (원심규정준용)	수출자에 직접 통지 또는 수출국 정부나 수출국 내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를 통해 통지 (원심규정준용)
조사결과	반덤핑 조치	조치의 철회 또는 유지, 관세율의 변경	조치의 종료 또는 연장, 관세율의 변경	신규수출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적용

22 반덤핑 관세 부과 이전 기간 동안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한 이력이 없으며,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한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수출자

02 상세관계 조사

그림 17 상계관세의 부과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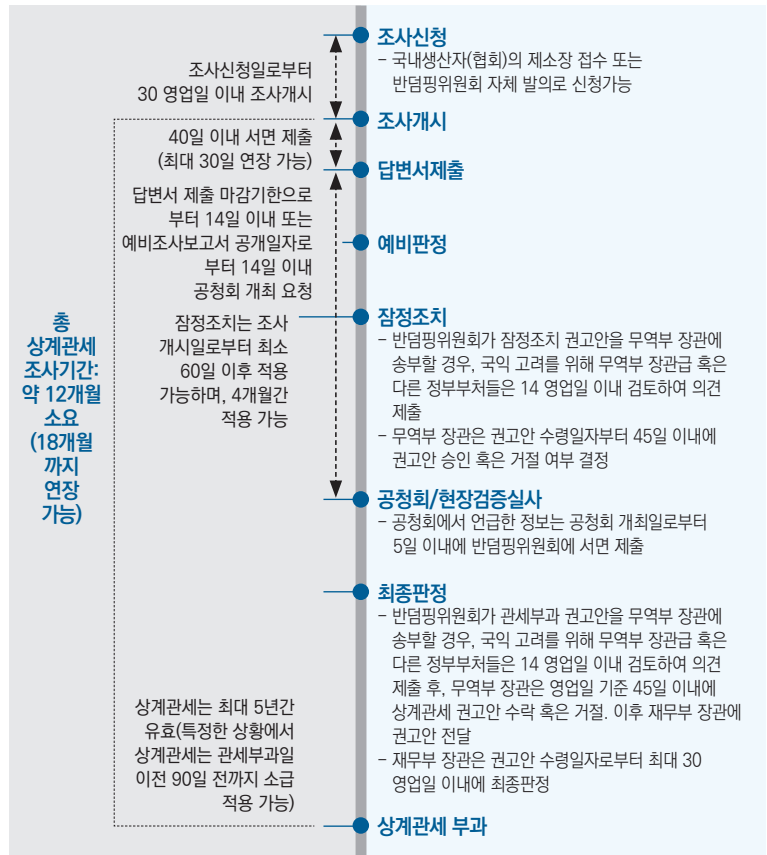
인도네시아는 (a)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의 직간접 재정 기여 (b) 수출증가 또는 수입감소를 위해 직간접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소득 및 가격 지원을 보조금으로 정의²³하고, 이러한 보조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조사가 실제 이행된 적은 없습니다.

상계관세 조사는 상계관세 부과 요건인 1) 보조금의 존재, 2) 국내 동종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피해우려, 3) 보조금과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반덤핑 위원회의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²⁴을 근거로 합니다.

23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 34/2011) 제1조

24 Peraturan Pemerintah Nomor 34 Tahun 2011 Tentang Tindakan Antidumping, Tindakan Imbalan, dan Tindakan Pengamanan Perdagangan

그림 18 인도네시아의 상계관세 조사절차



출처: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

조사

① 조사 신청(Request for Investigation)

상계관세 조사는 반덤핑 위원회의 직권 개시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생산자 또는 관련 협회의 조사 청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국내산업에 대한 대표성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여됩니다.

- (a) 조사를 신청하는 국내 생산자 또는 협회(신청인)의 생산량 합계가 신청인과 조사를 반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b) 신청인과 조사를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가 제소자와 조사를 지지하는 국내생산자와 조사를 반대하는 국내생산자의 생산량 합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a) 또는 (b)의 대표성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인 또는 조사를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직권조사의 경우 조사를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동종 물품 총 생산량의 25% 이상 이어야 조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반덤핑 위원회에 상계관세 조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존재, 제소자가 받은 피해 그리고 보조금과 제소자 피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반덤핑 위원회가 상계관세 조사를 직권 개시하는 경우 보조금의 존재와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일차적 증거로도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보조금율이 종가 기준 1% 미만이거나 보조금을 포함하는 제품 물량이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될 시 조사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국내산업 혹은 반덤핑 위원회가 대표성과 미소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계관세 조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개시됩니다.

② 조사 개시(Initiation of Investigation)

조사신청서 접수를 기점으로 반덤핑위원회는 30 영업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는 조사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며 반덤핑 위원회는 그 사실을 수출자, 수출국의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부, 수입자 및 국내 생산자에 통보하고 질문서를 발송합니다.

③ 답변서 및 정보 제출(Response and Information)

조사가 개시되면 반덤핑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에게 질문서를 발송합니다. 이해관계자는 답변 작성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최대 40일 이내 증빙 자료와 함께 인도네시아어로 서면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최대 30일의 기한 연장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예비판정 및 잠정조치(Preliminary Determination/Provisional Measures)

조사 기간 중 반덤핑 위원회가 보조금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산업 피해가 일견(prima facie) 존재한다고 판단하면, 반덤핑 위원회는 예비판정을 내리고 무역부 장관에게 잠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잠정 상계관세의 부과 절차는 잠정 반덤핑 관세와 동일하게 (a) 무역부 장관의 국익에 대한 검토 요청 (b) 재무부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 요청 (c) 재무부의 잠정 상계관세율 및 부과기간 결정으로 구성됩니다.

⑤ 공청회(Hearing)

상계관세 조사도 제출 정보와 증거 자료를 구두 설명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는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며, 참석할 이해관계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반덤핑 위원회에 성명, 회사명, 법적 대리인명 등의 등록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청회 중 언급된 내용이 이후 조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개최 후 5일 이내 반덤핑 위원회에 해당 자료를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⑥ 실사(Verification)

상계관세 조사도 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 검증을 위한 실사가 진행되며, 수출국 현지 실사가 진행되는 경우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에 그 내용이 통지됩니다.

⑦ 최종 판정 및 상계관세 부과(Final Determination)

상계관세 조사도 반덤핑과 마찬가지로 최종 판정까지 조사 개시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완료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종 긍정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무역부 장관은 상계관세가 국익에 미칠 영향 검토를 위해 권고안을 관련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 장에게 송부합니다. 무역부 장관은 재무부 장관에게 상계관세 부과 기간 및 관세율에 대한 결정을 요청하며, 재무부 장관은 권고안 수령일 기준 최대 30 영업일 이내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재심

① 중간 재심(Interim Review)

상계관세 조사의 중간 재심은 상계관세 조치를 철회할 경우 국내 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 진행되며, 그 절차는 반덤핑 조사의 중간재심 절차와 동일합니다. 이해관계자의 신청서 제출 혹은 반덤핑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될 수 있으며, 최초 관세 부과일로부터 최소 12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합니다. 조사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조사 결과 상계관세가 철회 혹은 유지되거나 관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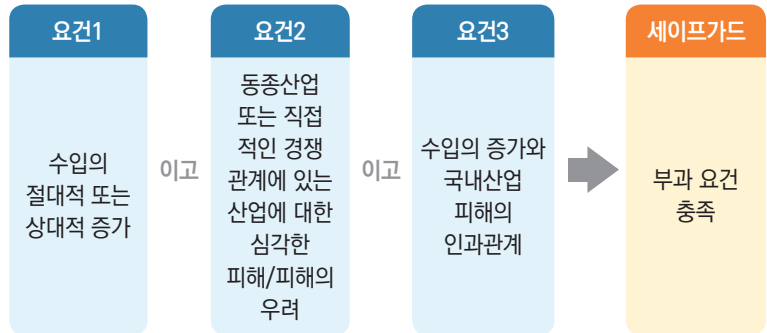
② 일몰 재심(Sunset Review)

상계관세 조사의 일몰 재심은 상계관세 부과 유효기간 연장을 원하는 제소자 혹은 국내 산업의 신청, 또는 반덤핑 위원회의 직권으로 개시됩니다. 일몰 재심에 대한 의사는 상계관세 부과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반덤핑 위원회는 상계관세 철회 시 발생 가능한 산업피해의 지속 여부 또는 피해 재발 여부를 조사하며, 조사 기간은 일몰 재심 개시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이며 그 절차는 원심 조사와 동일합니다.

03 세이프가드 조사

세이프가드 조사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요건인 ① 수입의 절대적/상대적 증가 ②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 ③ 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림 19 세이프가드조치 부과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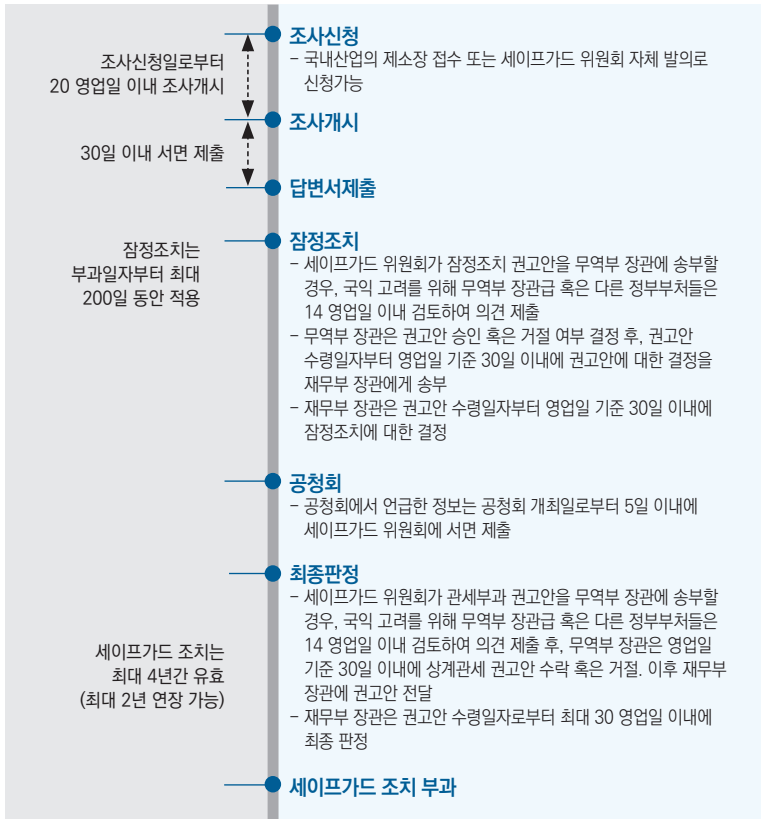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²⁵에 의거한 인도네시아 세이프가드 위원회의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5 Peraturan Pemerintah Nomor 34 Tahun 2011 Tentang Tindakan Antidumping, Tindakan Imbalan, dan Tindakan Pengamanan Perdagangan (영문 번역: Government Regulation Number 34 of 2011 concerning Antidumping Measure, Countervailing Measure, and Safeguard Measure)

그림 20 인도네시아의 세이프가드 조사절차



출처: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

① 조사신청(Request for Investigation)

세이프가드 조사는 세이프가드 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자체 발의 또는 인도네시아 국내 산업 이해관계자의 세이프가드 제조장 접수로 신청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는 동종 물품 혹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물품의 수입물량 증가와 심각한 산업 피해 혹은 피해 우려를 입증하는 일차적 증거를 담은 제조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② 조사 개시(Initiation of Investig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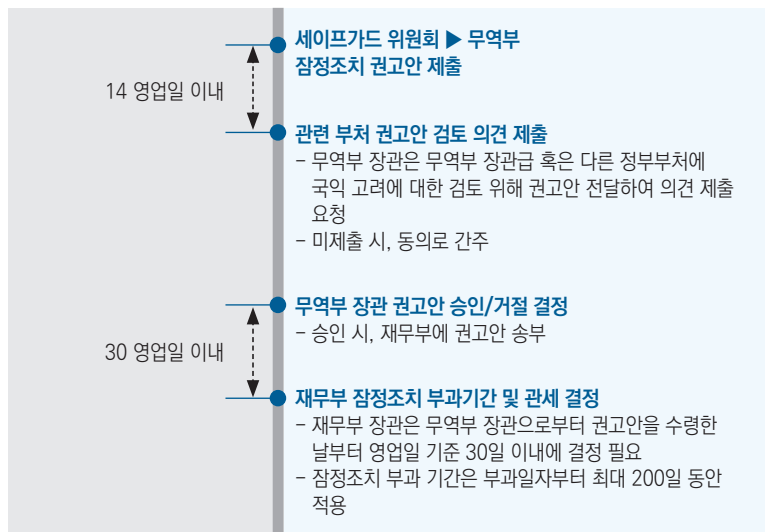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국내산업이 세이프가드 조사를 청원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조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이프가드 조사는 조사 개시 공고일부터 시작되고,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조사개시 사실을 국내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며, 무역부 장관은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사실을 통지합니다.

③ 답변서 및 정보 제출(Response and Information)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국내 생산자, 국내 산업, 수입자, 기타 유관 이해관계자들에 답변서 및 조사에 필요한 필요한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출을 요청 받은 당사자는 답변서와 증빙 자료를 최대 30일 영업일 이내 인도네시아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④ 예비판정 및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Preliminary Determination/ Provisional Measures)

그림 21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절차



출처: 수입규제조치에 관한 정부령(No.34/2011)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조사 진행 중 언제라도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지연 시 국내산업 구제가 어려울 만큼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역부 장관에게 잠정 조치 부과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는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의 형태로 취해지며, 관세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와 마찬가지로 국익에 미칠 영향 검토를 위해 유관 부처 및 정부기관 장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무역부 장관은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 금액 및 부과 기간을 결정하고, 세이프가드 위원회의 권고안 수령일로부터 최대 30 영업일 이내 결정 내용을 재무부 장관에게 송부합니다. 이후 재무부 장관은 무역부 장관의 권고안 수령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법령을 발표하고,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사실을 국내 산업 및 수입자 협회에 통보합니다.

이상의 잠정조치는 시작일로부터 최대 200일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종 판정에서 수입 급증 및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입증되지 못할 경우, 수입자는 잠정 세이프가드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공청회(Hearing)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수출자, 제소자, 국내 산업, 수입자, 수출국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조사 중 제출된 자료에 대한 구두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에서 언급된 정보가 이후 조사에 고려되기 위해서는 개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세이프가드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인도네시아어로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⑥ 최종 판정 및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Final Determination)

최종 판정을 통해 세이프가드 위원회가 관세부과를 최종 권고하는 경우, 무역부 장관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국익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치의 유형, 수준, 부과 기간을 결정합니다. 무역부 장관은 이 결정을 세이프가드 위원회의 권고안 수령일로부터 30 영업일 안에 재무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재무부 장관은 수령일로부터 30 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 후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이를 국내산업 및 수입자 협회에 통보합니다.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이프가드 관세 또는 수량제한의 형태로 취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 조치의 경우 관세율은 심각한 피해 및 피해 우려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량 제한의 경우 합리적 근거가 있지 않는 이상 그 규모는 이전 3년간의 평균 수입량보다 적게 산정될 수 없습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 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혹은 피해 우려를 구제하거나, 국내 산업의 피해 조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장 4년간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개발도상회원국 예외 규정²⁶을 적용해 1차 4년, 2차 2년을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⑦ 기타: 동일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재부과(Re-imposition of Safeguard Duty)

동일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기존 조치의 최종 부과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재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과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a) 조치 만료일로부터 최소 1년이 경과하고 (b) 과거 5년간 동일 상품에 대한 조치가 2번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도 재부과 가능합니다.

26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9.2조 "개발도상회원국은 제7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기간(최초 적용기간 및 그 연장을 포함하여 8년 이내)을 초과하여 최장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권리를 갖는다."

재심

① 중간 재심(Interim Review)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기간의 중간 시점에 중간 재심을 이행합니다.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정부령(No.34/2011)에 따르면 중간 재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무역부 장관에 (a)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b) 세이프가드 관세율 감소 혹은 수량제한 금액 증액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즉, 재심으로 조치 수준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재심의 최종 권고안 또한 수정조치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재무부에 송부되며 재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종료 또는 수정조치 이행에 대한 법령을 공고합니다.


② 연장 재심(Extension Review)

국내산업은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일 전에 조치 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재심 신청 기한을 '조치 만료일 이전의 합리적인(reasonable) 기간 내'로 규정합니다.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 위원회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무역부 장관에게 연장 결정을 요청합니다.



표 14 세이프가드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비교

세이프가드 조사	구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제품(like or directly competitive products)	규제대상 제품	동종제품(like product: 조사 대상제품과 모든 면에서 같거나, 이러한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지만 조사대상 제품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제품)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조사개시 결정기한	조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발도상국에 한해 전체 대상물품 수입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며, 3% 미만인 수입점유율을 가진 개발도상회원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의 합이 관련 상품의 총 수입의 9%를 넘지 아니한 경우	미소물량	반덤핑 조사: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3%에 미달하는 경우 (단 3%에 미달하는 국가들의 합이 7% 초과 시 미소물량으로 인정하지 않음) 상계관세 조사: 명시적인 규정 없음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로 인하여 동종 산업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 산업에 심각한 피해 및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성립요건	반덤핑관세: 덤핑수입의 존재 여부, 동종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및 피해의 우려, 덤핑 수입과 동종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상계관세: 보조금 존재 여부, 동종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및 우려 여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과 동종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부과일로부터 최대 200일 이내까지 적용 가능	잠정조치 기간	조시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해야 하며, 4개월간 적용(요청에 따라 6개월까지 연장 가능)
명시적 규정 없음	조사 기간	1년내 조사 종결(6개월 연장 가능)
4년(연장재심을 통해 연장 가능, 최대 10년까지 부과 가능)	조치 기간	5년(요청에 따라 종료재심을 통해 연장 가능)
조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시점 이전에 조치 조정 여부 검토	중간재심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행
관세, 수량제한(Quota)	조치 방식	기업별 관세율



한-인도네시아
CEPA와
수입규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은 2012년 협상이 시작되어 2019년 11월 최종 타결되었으며, 2020년 12월 서명 및 2023년 1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서문과, 13개의 장,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며²⁷, 수입규제는 ‘제5장 무역구제’ 영역에서 규정됩니다.

표 15 한-인도네시아 CEPA 목차

장/절	내용
서문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1절	정의
제2절	내국민대우
제3절	관세인하 또는 철폐
제4절	특별제도
제5절	비관세조치
제6절	제도규정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1절	원산지 규정
제2절	원산지 절차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4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27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은 한국이 체결한 FTA 포털인 www.fta.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장/절	내용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5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제6장	서비스무역
부속서 6-가	금융서비스
부속서 6-나	자연인의 이동
부록 6-나-1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한국)
부록 6-나-2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 (인도네시아)
부록 6-나-3	독립전문가
부속서 6-다	전문직 서비스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부속서 6-마	인도네시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7장	투자
부속서 7-가	국제관습법
부속서 7-나	수용
부속서 7-다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
제8장	경제협력
제9장	투명성
제10장	분쟁해결
부속서 10-가	중재절차 규칙
부속서 10-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규범
제11장	예외
제12장	제도 규정
제13장	최종 규정

01 한-인도네시아 CEPA의 수입규제 관련 조문

한-인도네시아 CEPA의 수입규제 조문은 WTO 의 반덤핑, 보조금,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협정 준수를 명시하는 동시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발동 요건을 갖습니다. 이는 ‘WTO Plus Rule’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표 16 한-인도네시아 CEPA와 WTO 협정상 반덤핑 및 상계관세 비교

구분	WTO 협정	한-인도네시아 CEPA 무역규제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제로잉*	제로잉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각국 관행에 따르고 있음	반덤핑 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제5.7조)
	조사개시	조사 개시 사실을 통지 또는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덤핑협정 제5.5조, 상계관세협정 제11.5조),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반덤핑조사개시 최소 15일 전 사전통보 (제5.8조)
	조치 종료 이후 동종제품에 대한 조사의 제한	관련 규정 없음	종료재심에 의해 조치가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금지(제5.9조)
	누적적 평가**	누적적 평가는 조사당국의 재량 (반덤핑협정 제3.3조, 상계관세협정 제15.3조)	누적적 평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도록 규정 (제5.10조)
	우회덤핑 조사	우회덤핑 관련 규정 없음	제5.11조(반 우회덤핑 조사 협력) 당사국에 원칙적 조사 사실 제공, 모든 이해관계자에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필수 사실을 알려 의견 제시의 기회 제공

* 제로잉: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은 경우(양의 덤핑마진)만 덤핑 마진산정에 포함하며,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음의 덤핑마진)는 마진 계산에 반영하지 않고 '0'으로 처리하여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방식

** 누적적 평가: 두개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덤핑률 및 조사신청물품의 수입량이 미소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조사신청물품간 및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생산품 간의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 피제조국의 수입산에 의한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함



02 양자 세이프가드

양자 세이프가드(Bilateral Safeguard)는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한 수입 증가로 동종 및 직접 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 인하를 정지하거나 FTA 특혜 관세율을 최혜국(MFN)관세율 수준까지 인상하도록 허용한 규정입니다. WTO협정을 근거로 한 다자 세이프가드(Multilateral Safeguard)는 그 적용 대상이 원산지와 무관한 전 세계 국가로부터의 수입 제품인 것에 반해, 양자 세이프가드는 FTA 체결 당사국 사이의 조치라는 점이 다릅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는 제5장 제1절에서 양자 세이프가드의 성립 요건 및 적용 기간을 규정합니다.

양자 세이프가드는 본질적으로 FTA의 무역 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제도이기에, FTA체결에 따른 수입이 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substantial cause)’인 때에만 발동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구체화 해 남용을 방지합니다. 발동 기간은 2년 이하이며, 1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양자세이프가드는 다자세이프가드와는 달리 협정발효 후 10년 이내 과도 기간에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²⁸



28 단,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인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과도기간으로 함

표 17 한-인도네시아 CEPA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 비교

양자 세이프가드	구분	다자 세이프가드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	근거 규정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
체약 상대국(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조치 대상국	전세계 국가
(CEPA)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수입 급증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준의 물량과 조건으로 수입	성립 요건	수입의 증가 수입의 증가로 인한 동종 산업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및 피해의 우려
협정 발효일 이후 10년(2032년 12월 31일)까지 발동 가능	발동가능 기한	기한 없음
협정에 따른 관세율의 추가 인하의 정지 또는 협정 이전 수준으로까지 관세 인상 ²⁹	조치	관세, 수량제한(Quotas), 관세율 할당(TRQs: Tariff Rate Quotas)
예비판정 이후 180일 이내	잠정조치 발동기간	예비판정 이후 200일 이내
잠정조치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나, 1년간 연장 가능	발동기간	잠정조치 기간을 포함하여 4년, 연장 시 8년(개발도상국의 경우 2년을 추가하여 최장 10년까지 부과 가능)

29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하여지는 시점 혹은 협정 발효일 직전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 관세율 또는 한-인니 CEPA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동 협정 부속서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협정 제5.2조 나.)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요건

CEPA가 규정하는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요건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입니다.

- (a) FTA 협정 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한 수입 물량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
- (b) 이러한 수입 급증이 실질적 원인이 되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 존재

위 조사개시 요건 중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에 대한 판정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4조 1항 가호에 따라 판단됩니다. 즉 산업피해는 단순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닌 수입산의 점유율, 판매, 생산, 손익 등과 관련한 구체적 지표를 근거로 평가됩니다.

조사 절차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는 FTA 협정 체결에 따른 수입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증하여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개시됩니다.

조사가 개시되면 한-인도네시아 CEPA협정 제5.3조에 따라 양국은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며, 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 검토와 조치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양자 세이프가드 최종 부과 이전에 최대한 협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자 세이프가드와 마찬가지로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 이해관계자는 답변서를 제출하며, 조사 당국은 필요 시 현장실사를 진행해 제출된 정보의 정확을 파악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추가 요청하기도 합니다.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진행되며 1년 이내 종결되어야 합니다.

조사결과 조사당국이 긍정 예비판정을 내리는 경우 판정일 기준 180일 동안 잠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다자 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 기간은 최장 200일). 최종 긍정판정 이후 양자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간은 잠정조치

기간을 포함해 2년까지, 필요 시 1년 연장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한-인도네시아 CEPA협정은 제5.5조에서 보상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는 양자 세이프가드가 FTA 체결이라는 공정 무역 관행으로 피해 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보상 규정에 따라 양자 세이프가드 실행 당사국은 해당 조치로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 형태의 무역 자유화 보상을 상대국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는 조치 부과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양국간 합의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은 상대국에 대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수입 증가로 취해진 세이프가드 조치의 경우, 해당 조치가 유효한 최초 2년 동안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조치 유형

양자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최종 긍정 판정이 내려지면, 수입국은 다음 두 방식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a) 한-인도네시아 CEPA에 규정된 관세율의 추가 인하 정지
- (b)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관세율 인상
 - 조치 시점에 발효 중인 최혜국(MFN) 실행 관세율
 - 한-인도네시아 CEPA협정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2-가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 CEPA협정 발효일 직전에 유효한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 관세율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유의 사항

인도네시아 반덤핑 조사 질문서를 통해 대응을 위한 구체적 유의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³⁰. 반덤핑 조사 질문서는 총 8개의 Section이 있으며 답변은 인도네시아어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입규제 조사 질문서의 큰 특징은 ①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가 넓고 ② 관련 정보를 관계사/비관계사, 내수/인도네시아 수출/제3국 수출 등으로 세분화되며 ③ 방대한 양의 자료를 다양한 분류 형태로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표 18 인도네시아 반덤핑 질문서 구성

구분		제출자료
Section A	General Information (일반정보)	연락처, 대리인, 기업정보(법적지위, 주주명부, 조직도, 관계사 정보 등), 회계정책, 생산제품 정보
Section B	Product Description (제품설명)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설명(제품코드 시스템 등), 제품통제번호(Product Control Numbers)
Section C	Operating Statistics (영업 실적)	시장별 영업이익, 손익계산서(연결/개별), 생산량 및 생산능력, 재고, 고용, 투자, 유통채널
Section D	Domestic Sales of the Product Concerned (대상제품의 내수판매)	내수판매에 대한 설명 (판매프로세스, 판매계약, 가격표, 판매송장 샘플, 관계사 비용 등), 내수판매직접비 및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 (직접비와 조정사항이 반영된 내수판매 데이터베이스는 Section G에서 제출)

30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한 적 없으며 세이프가드 조사는 수출자에게 질문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구분		제출자료
Section E	Export Sales of the Product Concerned to Indonesia and Other Market (인도네시아 및 제3국 수출판매)	수출판매에 대한 설명 (판매프로세스, 중개무역에 대한 설명 - 해당하는 경우, 판매계약, 가격표, 판매송장 샘플, 관계사 비용 등), 인도네시아향 수출판매 현황, 수출판매직접비 및 조정사항에 대한 설명 (직접비와 조정사항이 반영된 수출판매 데이터베이스는 Section G에서 제출)
Section F	Cost of Goods Sold and Operational Expenses (매출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비)	회계제도 및 정책, 생산공정 및 생산원가(COP), 직접재료 또는 주요 부품의 구매, 매출원가와 판매 및 일반관리비 요약 (원가 데이터베이스는 Section G에서 제출)
Section G	Computerized Information Required (제출해야 하는 전산자료: 데이터베이스)	내수/수출(인도네시아향, 제3국) 판매, 원가 데이터베이스
Section H	Check List (체크리스트)	

01 넓은 답변 대상 범위

인도네시아 반덤핑조사 대응 시 우선 유의할 점은 질문서에 대한 답변 제출을 요구 받는 회사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물품의 생산 및 판매와 일부분이라도 관련 있는 관계사까지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개별 제출해야 하며, 만일 한 회사라도 답변서 제출이 미비할 시 그룹 전체의 답변 전체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덤핑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해 덤핑마진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서는 관계사 현황 및 관계사 거래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에 각 회사별 답변서의 상호 정합성 검증 과정에서 누락 정보가 쉽게 드러날 수 있고, 이 경우 그룹 전체의 답변서가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의 이전 시점부터 작성 준비에 누락되는 관계사 및 정보가 없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02 세분화된 자료 유형

질문서는 세부적으로 분류된 자료를 요구하는데, 가령 답변자는 조사 관련 정보를 관계사/비관계사 거래, 내수/인도네시아 수출/제3국 수출 등으로 상세 분류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Section C는 조사 대상 기간의 직전 3년의 손익계산서까지 포함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에 답변자는 관계사와 비관계사에 대한 판매를 구분하고, 각각 '전사/제품군/대상제품/서비스(해당시)'의 단계 별 구분된 형태로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은 평소 제품군·제품별 손익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분 손익계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군·제품별 손익을 관리하더라도 이를 관계/비관계사 거래까지 구분해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 또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원가·판매 및 일반관리비(COGSOE)에 관한 Section F도 COGSOE를 내수/인도네시아 수출/제3국 수출 및 전사/제품 군/대상 제품의 단계로 구분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원가를 판매 시장 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비용 또한 제품군 및 제품 별로 상세 분류해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Section F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수입규제 주요 품목인 철강 혹은 섬유·의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평소 원가 및 비용 항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03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요구

Section G는 아래 해당하는 10종류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합니다.

표 19 Section G 요구 데이터베이스 목록

DB명	내용
SALSPEC	제품코드(생산코드와 판매코드 연결), 각 시장별·제품코드별 판매량 및 판매금액
DMSALES	내수판매 데이터베이스
DMCUST	내수고객별 판매 데이터베이스 요약
INDSALES	인도네시아향 수출판매 데이터베이스
INDCUST	인도네시아 고객별 판매 데이터베이스 요약
OTHSALES	제3국 수출판매 데이터베이스
OTHCUST	제3국 고객별 판매 데이터베이스 요약
DMCOGSOE	내수판매제품의 원가 및 판매·일반관리비
INDCOGSOE	인도네시아 수출제품의 원가 및 판매·일반관리비
OTHCOSOE	제3국 수출제품의 원가 및 판매·일반관리비

특히 유의할 점은 제3국에 대한 수출 판매에 대해서도 내수 및 인도네시아 수출과 동일한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반덤핑조사에서도 제3국 수출판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긴 하나 대개의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의 판매수량 및 금액 등 요약된 형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반덤핑 조사는 제3국 수출 판매에 대해서도 거래 건 별 비용과 조정사항까지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므로, 답변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³¹.

31 반덤핑조사에 대응함에 있어 판매 데이터베이스 작성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판매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조정요소를 개별 거래건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추적 보고하고,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작업을 데이터베이스를 제3국 수출 판매 건에 대해서도 작성해야 하므로 다른 국가의 질문서 대비 답변에 많은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비관세장벽

인도네시아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와 같은 무역구제조치 외에도 사전수입승인제도, 3대 인증제도(표준규격인증·식약처인증·HALAL 인증), 국산부품사용요건 등의 제도를 실질적 수입규제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합니다.

01 사전수입승인(PI) 제도

주요 내용

사전수입승인(Persetujuan Impor, PI) 제도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품목군에 대한 수입물량을 사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수입승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본 제도는 사실상 수입쿼터의 기능을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타이어, 플라스틱 원료, 윤활유, 위험물 원료, 수공구, 시멘트, 비료, 세라믹, 판유리, 유기 화합물, 섬유제품, 철강 및 합금강제품, 중고 물품, 의류, 핸드폰, 천연 보석 등 총 4,260개 품목³²에 대한 사전 수입제도를 운영합니다. 특히 철강, 합금강, 파생제품의 사전수입승인 물량은 지속 축소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수출 기업은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수입승인제도는 2016년 12월 '무역부 장관령 2016년 제82호³³'를 근거로합니다. 승인신청 및 허가는 수출입 인허가 통합 포털 '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³⁴'에서 처리됩니다.

32 KOTRA, 2022 인도네시아 무역 투자 FAQ

33 PERATURAN MENTERI PERDAGANGAN NOMOR 82/M-DAG/PER/12/2016

34 Lembaga National Single Window, 웹사이트: <https://www.insw.go.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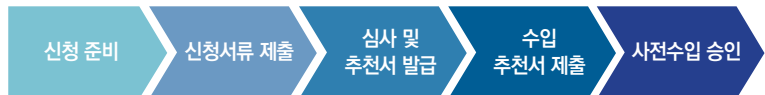
그림 22 INSW(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홈페이지



출처: 인도네시아 국가단일창구(INSW) 홈페이지

사전수입승인 제도 절차

그림 23 사전수입승인 진행절차



① 신청 준비

절차에 최소 3~4개월의 기간을 상정해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부에 수입승인 신청 시 구비요건에 유관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전수입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신청서 제출 이전 INSW 등록 웹사이트³⁵ 계정을 만들어 신규 사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 사용자 등록에는 사업자 고유번호(Nomor Induk Berusaha, NIB), 납세자 등록번호(Nomor Pokok Wajib Pajak, NPWP), 담당자 주민번호/여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법인 위임장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INSW 담당 부서가 검증 후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5 웹사이트 주소: <https://account.insw.go.id/register>

② 신청서류 제출

신규 사용자 등록이 승인되면, 수입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INSW를 통해 사전수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a) 수입자 등록 번호(API) 정보가 포함된 사업자 등록번호(Nomor Induk Berusaha, NIB)
- (b) INSW를 통해 인도네시아 산업부(또는 지정기관)가 발급한 기술 검토서
- (c) 수입업자가 일반수입자(API-U) 성격의 NIB를 소지한 수입업자일 경우, 판매계약서 또는 구매주문서
- (d) 합금강 수입의 경우, 밀 서티(Mill Certificates)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당해 신청서는 무역부가 운영하는 INATRADE 포털로 전달됩니다.

③ 서류심사

INATRADE 포털에 사전수입승인신청이 접수되면 무역부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④ 사전수입승인

무역부에서 신청서류 심사 후 수입승인이 허가되면 INSW로 허가서가 전달됩니다.

⑤ 수정 및 기간 연장

사전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제조업체(API-P 수입업자) 1년, 무역업체(API-U 수입업자) 6개월입니다. 또한 업체는 매월 15일 이전 수입승인 품목의 수입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사전수입승인 이후 승인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INSW를 통해 온라인 수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 내 승인물량을 소진하지 못해 잔여물량이 존재할 경우 1회에 한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연장 가능한 기한은 30일입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일 14일 이전에 INSW에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2 3대 인증(BPOM, SNI, 할랄) 제도

BPOM 인증 (1) 주요 내용

BPOM(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 인증이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감독청(BPOM)이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의약외품·전통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17년 제80호 식품의약품감독청에 관한 대통령령³⁶⁾을 근거로 식품 및 의약품 별 BPOM 규정³⁷⁾에 의해 시행됩니다. BPOM 인증 미완료 상품은 유통이 금지되기에 수입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2) BPOM 인증 절차

BPOM 인증 절차와 소요 기간은 품목별로 다릅니다. 식품이나 화장품의 인증은 통상 2개월~1년이지만 의약품이나 전통의약품 및 건강 보조제품의 경우 최장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품목별 인증 요건에 사전 대비할 경우, 일반 가공식품 3~4개월, 전통의약품 및 건강 기능식품은 6~8개월 시점에 완료될 수도 있습니다.



36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80 Tahun 2017 Tentang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37 “2017년 제30호 인도네시아 수입 식품 및 의약품의 감독에 관한 BPOM 규정”, “2020년 제27호 약품 등록 절차 및 기준에 관한 BPOM 규정”, “2020년 제8호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의 감독에 관한 BPOM 규정” 등이 있음

표 20 품목별 BPOM 인증 절차 및 소요기간

	식품 (일반 가공식품)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 식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BPOM 인증 절차	① 수입업체 등록 (아이디 부여) ② 제조사 등록, ③ 개별 제품의 접수 신청,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 심사, ⑤ 제품의 포장 디자인 심사	일반 가공식품 등록 절차와 유사하나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및 재료심사 등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높은 전문성을 요구함	일반 가공식품 등록 절차와 유사하나 ⑤ 포장 디자인 심사를 등록 후 사후관리에서 점검함
소요 기간	통상 3~4개월 (서류 보안, 보충 필요에 따라 6~12 개월 소요 가능)	통상 6개월 (서류 보안, 보충 필요에 따라 1년 이상 소요 가능)	통상 3개월 (식약청 업무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출처: KOTRA 2022 인도네시아 무역 · 투자 FAQ

① 수입업체 등록

BPOM 등록을 위해 수입업체는 BPOM 품목별 신청 홈페이지³⁸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이디 발급을 위해서는 최초 등록 대상 제품에 대한 제조사, 위임장, 자유판매 증명서(CFS)³⁹, 수입자의 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38 품목별로 다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가공식품: <http://e-reg.pom.go.id/>

화장품: <https://notifikos.pom.go.id/>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https://asrot.pom.go.id/asrot/>

39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CFS)란 제품이 제조국에서 정부부처의 허가를 받은 후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입에 사용되고 있음. 증명서에 제조사, 판매사의 회사명 및 주소, 품목리스트, 제품명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제조사 등록 및 ③ 개별 제품의 접수 신청

아이디 발급 후 수입업체는 등록 예정 제품에 대한 제조사 등록을 신청 하고, 해당 제조사가 생산한 개별 제품에 대한 등록을 접수해야 합니다.

④ 제품의 안정성 및 제조, 재료 심사 및 ⑤ 제품의 포장 디자인 심사

제조사 및 개별 제품에 대한 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제품의 안정성, 제조, 재료, 포장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⑥ 수입신고서 발급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수입신고서(Surat Keterangan Impor, SKI) 발급이 필요합니다. 수입업체는 BPOM 및 INSW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신고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구비 서류와 보조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21 수입신고서(SKI) 준비 서류

신청 구비서류	신청 보조서류
① 수입업체 사장으로부터의 위임장 원본	① 유통승인 공식 레터(NIE)
② 수입업체 직인이 날인된 신청서 원본	② 성분분석증명서(COA)
③ 수입자 고유등록번호(API), 납세자 번호 (NPWP), 사업자 등록증(SIUP) 사본	③ 송장
	④ 납세 증빙(NPWP)

출처: KOTRA 2022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3) BPOM 인증 품목별 유의사항

BPOM 인증 관련 유의사항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유통기한에 주의해야 하는데, 의약품,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제, 화장품의 경우 수입통관 시점에서 유통기한의 1/3이, 일반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의 2/3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백신, 면역 혈청, 항원, 호르몬, 혈액 관련 제품, 건강 기능 목적의 발효제품 등의 경우 유통기한 만료 최소 9개월 이전에 수입되어야 합니다.

가공 식품의 경우, 제조사의 HACPP 또는 ISO22000 사본이 필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외 제조사의 식품 안전 및 위생 관리 상태에 대한 직접 점검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품 시험성적서는 제조사의 자체 성적서도 가능하나, 외부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전통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제조사 등록 시 GMP⁴⁰ 사본에 대한 공증이 필수 제출되어야만 개별 제품의 등록 심사가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GMP의 경우, 추가적으로 제조소 총람(Site Master File, SMF)⁴¹을 제출 받아 WHO 기준 적합 여부를 별도 심사 받게 됩니다.

화장품은 비교적 타 품목에 비해 허가 심사가 간소화되어 있기는 하나 신재료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제품 명칭에 대한 평가 및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입증자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 제품 시험성적서 상의 화장품 유형에 따른 미생물, 중금속 검사 항목과 그 수치가 BPOM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SNI 인증

(1) 주요 내용

국가 표준(Standar Nasional Indonesia, SNI) 인증이란 제품 규격과 생산 과정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국가 표준규격 인증 제도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및 안전 보장, 유해 제품 및 서비스 유통 근절을 목적으로 '2014년 제20호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법률'⁴²에 근거해 도입되었습니다. 본래의 도입 목적은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해 국제경쟁력을

40 GMP(Good Manufacturing Process)란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공정 및 생산과정 전체를 면밀히 검증하는 식약청의 필수 인증임.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포함하여 모든 의약품, 식품, 화장품에 대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식약청으로부터 GMP 인증을 취득해야 함

41 제조소 총람(Site Master File, SMF)이란 GMP 평가자료 표준화 및 간소화를 위해 의약품 제조소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제반 현황을 GMP 기준에 맞게 요약 정리한 문서

42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4 Tentang Standardisasi Dan Penilaian Kesesuaian

	인증 적합성 평가 단계 및 활동	1a	1b	2	3	4	5	6	N
IV	인증 결정 단계: 인증의 승인, 유지, 연장, 중단, 철회에 대한 결정	V	V	V	V	V	V	V	V
	증명 및 라이선싱 단계								
V	(a) 적합성에 대한 내역서 발급(증명)	V	V	V	V	V	V	V	V
	(b) 적합성에 대한 내역서 사용 권리 부여		V	V	V	V	V	V	
	(c) 제품군에 대한 적합성 인증서 발급		V						
	(d) 관리감독 및 제품군 인증에 기반한 적합성 마크 사용 권리 부여 (라이선싱)		V	V	V	V	V	V	
VI	관리 감독 단계								
	(a) 유통 시장 샘플 시험			V		V	V		
	(b) 공장 샘플 시험				V	V	V		
	(c) 생산, 서비스, 제조공정에 대한 평가				V	V	V	V	
	(d) 운영 시스템 검사						V	V	

출처: 인도네시아 표준화기구(BSN)

(2) SNI 인증 발급 절차

SNI 인증 신청은 인도네시아 소재 수입업체 또는 인도네시아 소재 제조업체가 할 수 있으며, 해외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대표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SNI 인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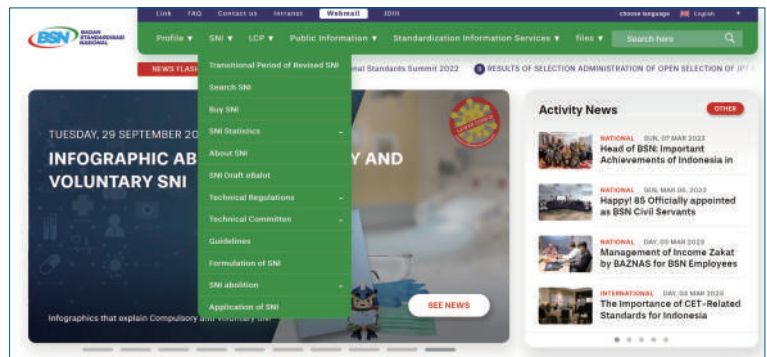
그림 24 SNI 인증 절차



① SNI인증 대상 품목여부 확인

신청사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원(Badan Standardisasi Nasional, BSN) 웹사이트⁴³에 등록된 SNI 인증 표준 목록을 확인해 수출입에 SNI 인증이 필요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록은 웹사이트 의 ‘Cari SNI/ Search SNI’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림 25 BSN 웹사이트



출처: 인도네시아 표준화기구(BSN) 홈페이지

43 웹사이트 주소: <http://sispk.bsn.go.id>

② 시험인증기관 확인

인증이 필요한 품목이 확인되면 인증을 의뢰할 시험인증기관(이하 LSPro)을 선정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가 인가위원회(KAN)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KAN의 인가를 받은 LSPro의 종류, 소재지, 인증 진행 가능품목 등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산업표준화센터(Pusat Standardisasi Industri) 웹사이트⁴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26 인도네시아 산업표준화센터 웹사이트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Indonesian Industrial Standardization Center (PUSAT STANDARDISASI INDUSTRI). The page title is "DAFTAR LSPRO" (List of LSPROs). The table below lists 10 LSPROs with their IDs, names, and addresses.

No	ID LSPro	Nama LSPro	Alamat
1	LSP-027-IDN	Alat Dan Mesin Pertanian	Jl. Taman Margasatwa No. 3, Ragunan, Pasar Minggu, Jakarta Selatan
2	LSP-017-IDN	BZTKS	Kawasan PUSPIPTEK Gedung 220, Setu, Tangerang 15314
3	LSP-013-IDN	Balai Besar Bahan dan Barang Tekstil (B4T)	Jl. Sangluriang No. 14 Bandung 40133
4	LSP-010-IDN	Balai Besar Industri Agro (ABIPro)	Jl. Ir. H. Juanda No. 11, Bogor
5	LSP-018-IDN	Balai Besar Industri Hasil Perkebunan (BBHP)	Jl. Prof. Dr. Abdurrahman Basalamah No. 28, Makassar 90231
6	LSP-025-IDN	Balai Besar Kerajinan dan Batik (TOEGOE)	Jl. Kusumanegara No. 7, Yogyakarta, Tlp: 0274-546111, Fax: 0274-543582
7	LSP-024-IDN	Balai Besar Keramik (BBK)	Jl. Jend. Ahamd Yani No. 302, BANDUNG
8	LSP-021-IDN	Balai Besar Kimia dan Kemasan (ChemPack)	Jl. Balai Kimia No. 1, Pekayon, Pasar Rebo, Jakarta 13069
9	LSP-009-IDN	Balai Besar Kulit Karet dan Plastik (JPA)	Jl. Soekarno No. 9, Yogyakarta, Tlp: (0274) 553699; Fax: (0274)559455
10	LSP-029-IDN	Balai Besar Logam dan Mesin (MDC)	Jl. Sangkuriang No. 12, Bandung, JAWA BARAT

출처: 인도네시아 산업표준화센터(Pusat Standardisasi Industri) 홈페이지

③ 신청서류 제출

수입 업자 및 인증 신청자는 신청서 및 아래 서류를 LSPro에 제출해야 합니다.

표 23 LSPro 제출 필요 서류

기본서류	기술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SNI 신청서 ② 회사의 설립증서 및 정관 ③ 사업허가증(SIUP) ④ 납세의무번호(NPWP) ⑤ 지식재산권 사무처의 상표등록증명서(Surat Pendaftaran Merek dari Dirjen HAKI) ⑥ 상표 또는 브랜드 사용 또는 협력서(Surat Pelimpahan Merek atau kerjasama antara pemilik merek) ⑦ 회사의 조직도 ⑧ 수입업자식별번호(API) *제품 생산자가 아닐 시 ⑨ 기타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서(Sertifikat Sistem Manajemen Mutu)* 보유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증된 품질 지침 ② 생산공정 순서도 ③ 주요 생산설비 목록 ④ 주요 원료 목록 ⑤ 검사 및 시험장비 목록 ⑥ 품질지침문서

출처: KOTRA 2022 인도네시아 무역·투자 FAQ

④ 최종 검토

LSPro는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및 완성도에 대한 검토, 기업에 대한 검토, 제조 공정 평가와 제품 표본 시험 검사 과정을 포함한 운영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합니다.

⑤ SNI인증 발급 및 사후관리

상기 과정을 모두 거친 후 SNI인증 발급이 가능하며, 인증 발급 후에도 타입별 정해진 기간에 따라 별도 시험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타입 1은 매 선적 배치 당, 타입 2은 매년, 타입 3은 6개월, 타입 4는 1년, 타입 5는 1년마다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타입 N은 별도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할랄(HALAL) 인증 (1) 주요 내용

할랄(HALAL) 인증이란 이슬람 율법(Syariah)에 따라 제품을 관리할 목적으로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 제품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인증 제도입니다. '2014년 제33호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법률'⁴⁵ 및 '2021년 제39호 할랄제품 보장 실시에 관한 행정부령'⁴⁶을 근거로 도입되었습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품은 돼지고기, 혈액, 인체장기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가공, 처리, 저장, 포장, 배포, 판매의 단계에서 비할랄 제품과 엄격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신할랄 인증 제도로 할랄인증이 의무화 되었고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에서 인증서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단, 인도네시아 정부는 BPJPH의 시스템 구축 및 세부 시행규칙 준비를 위해 품목별로 인증 의무화 유예기간을 정했습니다. 식품과 음료의 할랄 인증은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의무화되며 의약품과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 이후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종류별로 차등 적용되어 의무 적용 시작 년도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다양합니다.

표 24 품목별 할랄인증 의무화 유예기간

품목	유예기간
식품, 음료	2019. 10. 17. ~ 2024. 10. 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 10. 17. ~ 2026. 10. 17.
의약외품	2021. 10. 17. ~ 2029. 10. 17.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 10. 17. ~ 2034. 10. 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 10. 17. ~ 2026. 10. 17.

45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3 Tahun 2014 Tentang Jaminan Produk Halal

46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9 Tahun 2021 Tentang Penyelenggaraan Bidang Jaminan Produk Halal

품목	유효기간
의류, 헤드기어, 악세서리	2021. 10. 17. ~ 2026. 10. 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 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 10. 17. ~ 2026. 10. 17.
의료기기(A등급)	2021. 10. 17. ~ 2026. 10. 17.
의료기기(B등급)	2021. 10. 17. ~ 2029. 10. 17.
의료기기(C등급)	2021. 10. 17. ~ 2034. 10. 17.
그 밖의 비할랄 의약품, 생물제품, 의료기기 등	정의되지 않음

출처: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령 2019년 제26호, 제32-33조

신할랄 인증 제도로 웹사이트(Hala.go.id)에서 직접 인증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인증서 유효 기간은 4년입니다.

관련해 유의할 점은 인증서 발급 및 연장 비용 변경입니다. 인도네시아 영세기업에 부과되는 발급비용은 인하하였으나, 해외기업의 경우 기존보다 약 3배 이상 크게 인상되어 수출기업의 부담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표 25 인증서 발급 및 연장비용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인증서 발급비용	영세기업: IDR 2,000,000 (약 17만원)	영세기업: IDR 300,000 (약 2만 5천원)
	중견기업: IDR 3,500,000 (약 30만원)	중견기업: IDR 4,000,000 (약 34만원)
	해외기업: IDR 4,500,000 (약 38만원)	해외기업: IDR 12,500,000 (약 106만원)
인증서 연장비용	영세기업: IDR 500,000 (약 4만 2천원)	영세기업: IDR 200,000 (약 1만 7천원)
	중견기업: IDR 1,200,000 (약 10만원)	중견기업: IDR 2,400,000 (약 20만원)
	해외기업: IDR 1,200,000 (약 10만원)	해외기업: IDR 5,000,000 (약 42만원)

출처: KITA해외시장뉴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종교부, 새로운 할랄인증 개정 법령 발표⁴⁷

47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Detail.do?pageIndex=1&type=0&nIndex=1822142>

제품 인증 외에도, 2022년 3월 1일부로 시행된 '할랄제품보장청 2022년 제40호 법령⁴⁸⁾'에 근거해 새로운 '할랄 인증 라벨' 사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기존 발급된 인증 라벨은 2026년까지 유효하며, 신규 할랄 인증을 받을 경우 새로운 할랄 라벨을 사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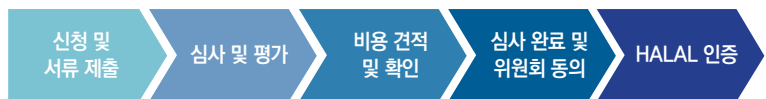
그림 27 할랄인증 라벨 변경



출처: jakartaglobe.id 홈페이지

(2) 할랄인증 발급 절차

그림 28 할랄인증 발급 절차



할랄 인증을 위한 절차는 할랄제품보장청에 접수 신청, LPH(심사기관) 심사, MUI FATW(이슬람최고율법위원회) 승인, 할랄제품보장청의 인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 및 서류 제출

할랄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BPJPH 할랄 인증 사이트⁴⁹에서 계정을 만든 후, 온라인으로 심사 신청을 접수 해야 합니다. 할랄 심사기관 (Lembaga Pemeriksa Halal, LPH)이 접수 등 관련 지원을 제공하며, 해외 할랄 심사 기관은 LPPOM MUI, Sucofindo Indonesia, Surveyor Indonesia로 총 3곳⁵⁰이 있습니다. 신청업체는 LPH를 통하지 않고도 사이트에 직접 접수가 가능하지만, 이후 절차⁵¹에서도 LPH가 연계되기에 신청 단계에서 LPH 지정은 필수입니다.

그림 29 할랄인증 신청 사이트



출처: 할랄제품보장청(BPJPH) 할랄인증 홈페이지

49 웹사이트 주소: <https://ptsp.halal.go.id>

50 LPPOM MUI 외 두 기관은 현재 해외제조사 심사 프로토콜을 준비 중으로 해외 심사 이행과 업무 지원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할랄 인증 심사 절차의 표준 업무 지침도 LPPOM MUI 기준을 따르고 있기에 해외 제조업체는 각 시점의 상황을 고려해 심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음. KOTRA 해외시장뉴스: 할랄제품보장청(BPJPH)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와 업무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30&CONTENTS_NO=1&bbsSn=246&pNttSn=195062)

51 BPJPH가 서류 평가 검토 후 그 결과를 지정 LPH에 통보하고, LPH가 인증 심사 및 비용에 대한 견적 발급

② 심사 및 평가

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할랄제품보장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기간 연장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에 더해 이전 인증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할랄제품보장청은 서류의 유효성과 상품, 서비스에 대한 할랄 조건 충족 여부를 검사합니다.

- (a) 할랄 인증 신청서(Application Letter)
- (b) 할랄 인증 등록서(Registration Form)
- (c) 제조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Copy of Business License)
- (d) 신청 위임장, 할랄 업무 담당자의 여권사본, 이력서(Copy of Halal Supervisor determination letter)
- (e) 인증 대상 제품 목록 및 할랄 인증 품목 유형(Name and type of product)
- (f) 인증 대상 재료 목록 및 현황(List of products and materials)
- (g) 인증 대상의 제조 공정도(Products manufacturing process)
- (h) 할랄안전관리시스템의 매뉴얼(Halal Assurance System Document)

③ 비용 견적 및 확인

LPH의 할랄 인증 심사 및 인증 비용에 대한 견적 발급 후 할랄제품보장청이 그 내용을 확인, 확정합니다. 신청 기업이 결정된 비용을 할랄제품보장청에 지급하면 접수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④ 심사 완료 및 위원회 동의

할랄제품보장청의 비용 수령 확인 후, 이슬람최고율법 위원회(MUI FATW)의 동의와 승인을 거쳐, LPH가 할랄 인증 심사를 완료합니다.

⑤ HALAL 인증

할랄제품보장청이 할랄 인증서를 발급해 신청 기업에게 송부하면 할랄 인증 발급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됩니다.

03 국산부품사용(TKDN) 제도

주요 내용

국산부품사용(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 제도란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된 인도네시아산 부품 비중을 규정하는 제도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합니다. TKDN 제도의 '국산부품'에는 최종 제품의 인도네시아산 원료, 부품, 서비스, 사업장 내 인도네시아인 인력, 생산 기계의 인도네시아산 비중, 인도네시아 기업 투자 자본 비율 등이 해당됩니다.

TKDN은 특정 산업분야·상품·서비스 유형에 대한 개별 법령에 근거하며,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TKDN 비율은 상품,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결합물의 총 생산비용에서 인도네시아산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됩니다. 총 생산비용은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생산간접비'입니다. 인도네시아산 부품 비용(Kandungan Dalam Negeri, KDN) 및 외국산 부품 비용(Kandungan Luar Negeri, KLN)을 구분해 계산 가능하며, 각 경우 TKDN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도네시아산 부품 비용을 이용할 경우

$$\text{TKDN}(\%) = (\text{총 KDN 생산비용}) / \text{총 생산비용}$$

② 외국산 부품 비용을 이용할 경우

$$\text{TKDN}(\%) = (\text{총 생산비용} - \text{총 KLN 생산비용}) / \text{총 생산비용}$$

생산비용 구성 요소 중 직접재료비는 재료의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산/외국산 재료비를 구분해 계산됩니다. 직접노무비는 근로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내국인/외국인을 구분해 비율을 산정합니다. 생산간접비는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시설의 소유권, 원산지 국가를 기준으로 구분해 아래의 표와 같이 인도네시아산/외국산 비중을 산정합니다.

표 26 생산간접비의 국산부품 사용을 산정 방식

생산이 이루어진 곳	사업 사용 장비 및 시설 공급자	국산부품 사용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기업	100%
인도네시아	외국 기업	75%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 기업	75%를 기본값으로, 합작 기업의 주식에 대한 인도네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의 주식 보유율에 비례하여 최대 25%의 사용률을 더함
외국	인도네시아 기업	75%
외국	외국 기업	0%
외국	인도네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 기업	합작 기업의 주식에 대한 인도네시아 기업과 외국 기업의 주식 보유율에 비례하여 평가됨

출처: KOTRA 2021 Indonesia Investment Guide

TKDN 검증 절차

그림 30 TKDN 검증 절차



① 신청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인 신청기업이 TKDN 검증기관(Lembaga Verifikasi Independen TKDN)에 직접 신청을 접수합니다. 준비에 지원이 필요할 시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지정한 2개의 TKDN 담당 기관인 PT. Surveyor Indonesia 및 PT. Sucofindo(Persero)을 통해 인도네시아산 비중과 검증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표 27 인도네시아 산업부 지정 TKDN 담당기관

PT. Surveyor Indonesia	주소	Unit Bisnis Industri dan Fasilitas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Lantai 7 Jakarta Selatan
	전화번호	+62-21-526-5526(내선번호 818)
	담당자	Lebrina Eka Fitriani 또는 Raden Andini Putri
PT. Sucofindo (Persero)	주소	Unit Bisnis Perdagangan, Industri, dan Kelautan Bagian Fasilitas Kandungan Lokal Jl. Raya Pasar Minggu Km. 34, Lantai 4 Jakarta Selatan
	전화번호	+62-21-798-3666(내선번호 2390)
	담당자	Nano Suprayogi 또는 Shasti

출처: 인도네시아 산업부 국산부품사용(Kementerian Perindustrian, TKDN) 홈페이지(2023. 5. 기준)

② 검증기관의 실사

TKDN 검증기관은 신청 접수 후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실사 및 국산 부품 사용률 계산 관련 검증을 수행합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검증기간은 TKDN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③ 패널 회의

TKDN 보고서에 대한 토론 및 패널 회의는 인도네시아 국산품 증대 (Peningkatan Penggunaan Produksi Dalam Negeri, P3DN) 프로그램 관련 기관인 P3DN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회의에 참가한 패널은 검증기관이 작성한 TKDN 보고서를 기반으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④ 인증서 입력

패널 회의를 통한 심사 완료 후, 검증기관이 TKDN 인증서를 인도네시아 국내 생산품 및 서비스 재고 목록과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⑤ TKDN 인증

TKDN 검증기관이 인증서를 상품 및 서비스 공급자인 신청기업에게 송부하면 TKDN 인증 절차가 최종 마무리 됩니다.

부록 약어 목록

약어	원문	국문
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할랄제품보장청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식품의약품감독청
BSN	Badan Standardisasi Nasional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원
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인도네시아 국가 단일 창구
KADI	Komite Anti-dumping Indonesia	반덤핑위원회
KDN	Kandungan Dalam Negeri	국산 부품 비용
KLN	Kandungan Luar Negeri	외국산 부품 비용
KPPI	Komite Pengamanan Perdagangan Indonesia	세이프가드위원회
LPH	Lembaga Pemeriksa Halal	할랄심사기관
NIB	Nomor Induk Berusaha	사업자고유번호
NPWP	Nomor Pokok Wajib Pajak	납세자등록번호
PI	Persetujua Impor	사전수입승인제도
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SKI	Surat Keterangan Impor	수입신고서
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국산부품사용제도

알기쉬운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

발 행 일 2023년 5월
발 행 처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02-2100-6983
편집 및 인쇄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인쇄사업부 02-325-1585
